35. Mme Barahona Riera demande si l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relatives aux droits successoraux ont été modifiées et quels sont les moyens que le Ministère de l'égalité entre les sexes ou d'autres institutions mettent à la disposition des femmes pour que celles-ci fassent valoir leurs droits en matière successorale. Elle souhaiterait savoir si le plan national de lutte contre la violence domestique a été efficace, statistiques à l'appui, et connaître ses effets sur la société. Enfin, quelles ont été les conséquences de la crise économique et financière en Corée sur l'emploi des femmes ?

36. M. PILLAY, soulignant l'attitude ambivalente de la délégation à l'égard du statut du Pacte dans la législation interne, demande si une loi spéciale ou une loi postérieure à la ratification de cet instrument peut déroger au Pacte, ce qui serait contraire aux obligations contractées par l'État partie. Il souhaite savoir pourquoi celui-ci n'a pas donné suite à la recommandation du Comité visant à assurer la primauté du Pacte sur les lois nationales et si les autorités coréennes comptent prendre des mesures pour s'acquitter de leurs obligations dans ce domaine.

37. M. RATTRAY demande des précisions sur le statut exact du Pacte en droit coréen. La délégation peut-elle notamment indiquer si les obligations découlant de cet instrument sont juridiquement contraignantes ou si elles ne sont considérées que comme des objectifs souhaitables qu'il conviendrait, à terme, de réaliser ? Plus particulièrement, est-il possible, en République de Corée, d'invoquer devant un tribunal une violation des dispositions des droits énoncés dans le Pacte ? Des exemples précis peuvent-ils être cités, le cas échéant ? Quelle est la nature des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travailleurs migrants ? S'agit-il de règles administratives ou de textes de loi ?

38. M. HUNT aimerait savoir si les institutions coréennes de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qui doivent être créées seront compétentes pour assurer le respect des droits économiques, sociaux et culturels établis par le Pacte. Il rappelle par ailleurs que conformément au Programme d'action de la Conférence mondiale sur les droits de l'homme, qui s'est tenue à Vienne en 1993, les États sont tenus de mettre en œuvre un plan national d'action en faveur des droits de l'homme. Cela a-t-il été fait en République de Corée ou cette tâche incombera-t-elle à la future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

39. M. THAPALIA juge intéressantes les informations transmises par la délégation coréenne mais note qu'elles diffèrent sensiblement de celles qui émanent d'autres sources. Selon un rapport d'Amnesty International, les demandeurs d'asile connaîtraient de nombreux problèmes en République de Corée et subiraient des pressions, voire des menaces, pour ne pas dénoncer les mauvais traitements dont ils sont victimes. Un autre rapport, émanant du Département d'État américain, affirme que les personnes d'origine chinoise nées et résidant en République de Corée ne peuvent ni acquérir la citoyenneté coréenne ni accéder à la fonction publique. Ce même rapport fait également état de discriminations multiples contre les femmes, au sein de la famille, au travail et dans la société en général. Qu'en est-il de ces assertions ? La délégation peut-elle expliquer la différence constatée entre le contenu des textes de loi et la discrimination de facto à l'égard des femmes, des handicapés et des réfugiés ? Quelles mesures concrètes le Gouvernement a-t-il prises dans le domaine des droits économiques, sociaux et culturels depuis la présentation du deuxième rapport périodique au Comité ? En outre, la délégation pourrait-elle fournir des données statistiques sur la violence domestique, préciser le nombre d'affaires de cette nature dont ont été saisis les tribunaux et indiquer les délais nécessaires à leur règlement ?

40. M. CEAUSU estime que les deux principes de droit romain, à savoir *lex posterior derogat priori* et *generalibus specialia derogant*, ne sont pas correctement appliqués en République de Corée. En effet, pour qu'ils le soient, il faudrait que l'État partie, d'une part, déclare que le Pacte a le statut de loi spéciale et l'emporte donc sur toutes les lois précédemment adoptées, et que, d'autre part, il donne l'assurance qu'aucune loi nationale relative à des droits visés par le Pacte ne contient de dispositions contraires à celui-ci. Ce n'est qu'à ces deux conditions que le Pacte pourrait primer la législation nationale.

41. M. Ceausu note par ailleurs que, bien que les travailleurs étrangers illégaux soient protégés par la législation sociale et la législation du travail coréennes, ils risquent, compte tenu de leur situation, d'être sanctionnés pour infraction à la loi. Or, l'embauche illégale de travailleurs étrangers dev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infraction imputable à l'employeur et non à l'employé car, bien souvent, celui-ci ne parle pas le coréen et connaît mal les lois en vigueur en matière de législation du travail.

42. M. Ceausu relève en outre que la République de Corée a accepté, pour des raisons humanitaires, de scolariser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primaire les enfants de travailleurs étrangers. Or, il convient de noter que les droits des enfants sont, indépendamment du statut de leurs parents, des droits *erga omnes*, c'est-à-dire opposables à tous, ce qui signifie que tout État est dans l'obligation, dès le moment qu'il a connaissance de la présence d'un mineur sur son territoire, de lui assurer une protection et la jouissance de tous les droits prévus par le Pacte. L'État partie n'a donc, en l'espèce, pas de raisons humanitaires à invoquer : il ne fait que remplir les obligations qu'il a contractées en vertu du Pacte.

43. M. Ceausu demande en outre à la délégation de préciser ce qu'il advient des demandeurs d'asile dont la demande a été rejetée. Quittent-ils le pays de leur plein gré ou sont-ils renvoyés dans leur pays d'origine contre leur volonté ?

44. De l'avis de M. GRISSA, la question des travailleurs étrangers semble poser quelques problèmes à la République de Corée. Or, à en juger par les chiffres disponibles, la République de Corée a un taux de migration nette négatif, d'environ 3 ‰. Si de nombreux ressortissants coréens quittent leur pays et que, dans le même temps, la population vieillit, l'État partie va bientôt devoir, à l'instar d'autres pays européens, faire appel à une main-d'oeuvre étrangère afin d'assurer sa croissance économique. Que compte-il faire pour s'attaquer au problème du vieillissement de sa population ?

45. M. MARTYNOV demande à la délégation d'indiquer si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qui doit être établie sera compétente pour traiter de la violation des droits garantis par le Pacte. Par ailleurs, un travailleur migrant marié à une Coréenne se voit-il automatiquement délivrer un permis de résidence ? La délégation a en outre indiqué que chaque entreprise occupant plus de 300 personnes était légalement tenue d'employer 2 % de personnes handicapées. Cette disposition est-elle réellement appliquée et comment l'est-elle concrètement ?

46.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déclare que sa délégation répondra ultérieurement aux questions posées par les membres du Comité. Elle est toutefois en mesure de leur annoncer que l'Assemblée nationale coréenne a désormais adopté la loi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La séance est levée à 18 heures.

TOP | HOME | INSTRUMENTS | DOCUMENTS | INDEX | SEARCH

©1996-200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va, Switzerland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12/2001/SR.13
7 May 2001

Original: ENGLISH

Summary record of the 13th meeting : Republic of Korea. 07/05/2001. E/C.12/2001/SR.13. (Summary Record)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wenty-fifth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13th MEETING

Held at the Palais Wilson, Geneva,
on Tuesday, 1 May 2000, at 10 a.m.

Chairperson: Ms. BONOAN-DANDAN

CONTENTS

CONSIDERATION OF REPORTS:

(a)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tinued)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d)

The meeting was called to order at 10.05 a.m.

CONSIDERATION OF REPORTS:

(a)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agenda item 6) (continued)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1990/6/Add.23, E/C.12/Q/REPOFKOR/2, HR/CESCR/NONE/2001/4) (continued)

1. At the invitation of the Chairperson, the members of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sumed their places at the Committee table.

2. The CHAIRPERSON invit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nswer Committee members' questions from the previous meeting.

3. Ms. Kyung-Wha KANG (Republic of Korea) said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d the previous day enacted legislation establishing a Human Rights Commission. The Commission would be a wholly independent agency made up of 11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a term of office of three years renewable once. Its primary tasks would be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either upon request or proprio motu, and to recommend human rights policy to Government.

4. The Commission's jurisdiction would cover violations by government agencies or offices or by public officials and case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employment and job training. It would not cover legislation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urt rulings, or cases already investigated or under investigation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5. The Commission's enquiries would proceed primarily on the basis of documents, but it might decide to question the parties directly, in which case it could hold hearings or visit premises as required. It would have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with the exception of State secrets and information regarding case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and anyone withholding information would be liable to heavy fines. It could make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offices and local administrations and offer an opinion to the courts. It would draw up its own programme of work and its own budget in complete independence.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he budget would go through the Ministry of Justice, but the Ministry would have no right to revise the budget plan.

6. In response to Committee members' questions regarding the Covenant's status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she said that thus far there had never been a conflict between domestic legislation and the Covenant. The content of the latter was fully reflected in Korea's Constitution and, under the Constitution, had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Draft legislation was always screened and went no further if it was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eaties, while domestic law was interpreted by the courts in such a way as to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Supreme Court guidelines. De facto, therefore, the Covenant outranked domestic legislation.

7.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Mr. Malinverni, she said that,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2, a refugee was defined as a person cover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Korea's policy was changing: in 2001 an Ethiopian had been given refugee status, and many similar decisions were expected in the future. Processing time for asylum applications was also becoming shorter. In addition,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had opened an office in Seoul in April 2001, which sh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Korea. Regarding appeal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sylum-seekers who had been turned down by the screening committee had seven days to file an appeal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hose who were denied refugee status were not forced to go anywhere they did not wish to go.

8.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Mr. Grissa, she said that the foreigners he had referred to were illegal immigrants, whereas Koreans who migrated to other countries did so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ose countries and were therefore lawful migrants. Applications for immigration to Korea were judg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which Korea did not believe were any more rigid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9.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Mr. Sadi, she sai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had been strengthened under the revised curriculum implemented in 2000. However, in order to give concrete examples, she would have to point to the human rights element in the textbooks for many different subjects, because human rights education cut across disciplines. Training courses for judge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covered specific and general aspec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women's rights, and the screening procedure for new civil servants included a test on the Constitution.

10. In answer to a question from Mr. Thapalia, she said that the law on the acquisition of land by foreigners had been revised in June 1998 and most of the restrictions had been lifted. In addition, there had recently been many cases of foreigners being recruited into public service.

11. In response to questions from Mr. Sadi and Mr. Thapalia, she said that, under the Gender Equality Act and the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Relief Act, it was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act to correct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ducation, law enforce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Victims made a complaint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hich, if it judged that the case was indeed one of gender discrimination or sexual harassment, helped the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or, if that was not possible, made its own recommendation for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If the perpetrator did not implement the decision, the victim could go to court. Between 1999 and 2001, 353 cases had been brought to the Ministry's attention, including 166 cases of sexual harassment and 130 cases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12.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Mr. Atangana, she said that,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re were 63 advice centres and seven shelters nationwide, while for the victims of family violence, there were 120 advice centres and 27 shelters nationwide. Some financial assistance was available for victims. The perpetrators of acts of family violence were not prosecuted under the criminal law, but courts could ban them from contact with the family or order them to seek therapy, perform public service or undergo education. The aim was to bring the family together again by curing the perpetrator. The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on the other hand, could be prosecuted under the criminal law, depending on the offence.

13. In response to questions from Ms. Barahona Riera, she said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or 2001 was US$ 26.7 million, which was more than twice the amount allocated to the former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The Ministry, with a staff of 102 had a general policy office, bureaux dealing with gender discrimination and promotion of women's rights, and a Committee on Gender Discrimination to receive complaints. Six other ministries also had officials in charge of women's policy. In a campaign to raise awareness of legislation against sexual violenc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e Ministry had issued a series of booklets in easily understood comic strip format. Family violence, for example, was now beginning to be seen as a social ill rather than a private problem and many more cases were being reported. The Civil Code had been revised to abolish all privileges, including inheritance privileges, accorded to (typically male) heads of households,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considering amendments to certain provisions that discriminated against divorced women. The economic crisis had not affected women in general significantly more than men. Measures benefiting women laid off as a result of restructuring included generous subsidies to companies employing women heads of households, free retraining in order to help women acquire the skills needed to set up their own business, and financial help in starting up a business.

14. In answer to a number of questions regarding migrant workers, she said that all who entered Korea legally had the same labour rights as Korean nationals. Illegal migrants had no formal coverage under labour law, except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ich, under a 1998 directive, all workers were entitled to irrespective of their legal status. Korea was seriously considering legislation to introduce a work permit and visa system, which should lead to a reduction i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Mr. Ceausu, she agreed that more should probably be done to inform foreign workers, whether legal or illegal, about their status under the law.

15.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Mr. Kuznetsov, she said that, given the position she had described in her opening comments with regard to labour rights for certain civil servants, among others, Korea was not yet read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The Tripartite Commission was discussing the issues and the Government's proposals on legislation would be in line with their conclusions.

16. With regard to the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ILO had inspected the situation in 1998 and made recommendations regarding military service and prison sentences with labour. For example, it had suggested that, for those who were allowed under the Military Service Law to do public service instead of military service, conscription should be changed to voluntary service. That would, however, have involved changes to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would have been highly delicate given the continuing military stand-off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It had thus not been possible to implement those ILO recommendations.

17. In reply to Mr. Martynov, she said the overall proportion of disabled persons in the workplace was 1 per cent. Employers were given many incentives, both negative and positive,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disabled people in the workplace. If companies employing more than 300 workers did not meet the 2 per cent quota, they could be fined; but if they did meet it, they would receive generous subsidies. Existing workplaces could obtain interest-free loans to adapt to disabled workers, while new companies could obtain low-interest loans to design a workplace that would be suitable for the disabled.

18. In response to Mr. Rattray, she said she regretted the impression he had gained concerning her Government's general philosophy. Decades of Government-driven growth had shown that economic prosperity based on development and expansion that lacked a human face, and in the absence of genuine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or the rule of law, was unsustainable. The Government wanted people to enjoy dignified, prosperous lives. The country had been on the verge of bankruptcy in mid-December 1997 when the present Government had come to power, and the foreign currency reserve had fallen to some US$ 3.9 billion, barely enough to sustain the country's economy for a few days. The immediate task of rescuing the country from bankruptcy had been addressed through the cancellation of the negative legacies of collusion between the previous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ests and through the overhaul of over-extended, unprofitable corporations. When layoffs had been necessary the new Government had verified the need for them and compensated the victims to the best of its ability.

19. Mr. SADI said that, while most States parties gave the Committee sweeping assurances with regard to the domestic law's conformity with the Covenant, unless those assurances were tested, examples supplied and precedents cited it was difficult for the Committee to make a fair assessment. Could the delegation provide such information?

20. Mr. HUNT reiterated his earlier observa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apparently not prepared a national plan of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199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If so, that task might be assigned to the new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21. Mr. MALINVERNI repeated his earlier question as to what assistance asylum-seekers received while awaiting a decision on their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22. Mr. WIMER-ZAMBRANO asked whether the delegation could furnish an official version of the reasons for the region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which had also affected Korea, and explain the means used for its recovery.

23. Mr. RATTRAY asked wheth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ould be empowered to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s in respect of alleged abuses by the military and the police.

24. Mr. TEXIER said it appear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ould not be concerned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ut solely wi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 drew the delegation's attention to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0 on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hoped that the country's next periodic report would show that those rights had been added to the commission's mandate.

25. Ms. Kyung-Wha KANG (Republic of Korea) said that the delegation did not possess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ut that it would certainly adjudicate cases of discrimination in any sphere. The authorities would provide in writing the answer to Mr. Rattray's question as to whether the commission would investigate cases of alleged abuses by the military and the police. As for Mr. Malinverni's question, most asylum-seekers were migrant workers and were covered by the directive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elating to such matters as wages and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Their applicant status afforded them freedom of movement to their place of work and between the various administrative offices; they were not detained as illegal immigrants, as technically required. To Mr. Hunt's ques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she replied that, while there was no overall government move to do so, work towards that end had been undertaken at the individua. ministerial level. She agreed that it might be a task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6. The economic crisis had stemmed basically from previous distortions and irregularities in the country's econom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had dictated banking operations, forcing banks to conduct their affairs on the basis of political expediency rather than sound business decisions, and resulting in their own insolvency and huge unprofitable businesses. Meanwhil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d languished for lack of loans,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had declined, as had the country's international credit rating. When recession had struck the region foreign investors, losing confidence in the country, had withdrawn their resources,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sudden financial crisis. Having diagnosed the root cause of the crisis, the new Government that had come to power a few months later had undertaken the prime task of weeding out all th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that had hampered the market economy, using bold measures in the corporate and public sectors, as well as the labour sector.

27. The authorities would take account of Mr. Sadi's recommendation regarding integration of the Covenant into domestic law.

28. The CHAIRPERSON invited the delegation to introduce the written replies on items 8-20 of the list of issues, covering articles 6-8.

29. Ms. Kyung-Wha KANG (Republic of Korea), introducing the written reply to item 12, added that the problems facing the garment and shoe industry were not a direct result of the current restructuring, but reflected a general transition of the economy from labour-intensive to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which had long pre-dated the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restructuring. Women workers did face unemployment with the decline of those industries, in which they were heavily concentrated. There was an upward trend in the number of women performing irregular work, but the Ministry of Labour had a special management plan for the employment security of dispatched and other irregular workers, through regular audits of their main workplaces, followed by recommendations for remedial procedures when they were found to be unjustly treated.

30. Referring to item 13, she said that the key laws on 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were the 1999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Relief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Act, revised in 1995. Victims also had full recourse to due process of law. On item 14, she said the Minimum Wage Act had been amended in November 2000 to extend coverage to all workplaces. Regarding item 15, the updated statistics for 2000 and February 2001 were 163,000 and 195,000 illegal foreign workers respectively. In connection with item 19, although more strikes were taking place, a larger number were lawful, reflecting the Government's efforts to guarantee union rights to legitimate action, and a growing maturity in labour management relations. Teachers, however, were not allowed to strike in order to prevent disruption in the classroom.

31. The CHAIRPERSON invited Committee members to put to the delegation their questions on items 8-20.

32. Mr. RIEDEL, referring to item 12, noted that over 70 per cent of the female workforce was employed in small firms and forced to go through subcontracting agencies. The existence of a special management plan and regular audits was good in theory, but he wished to know whether there was an inspectorate that actually enforced those plans, since NGO reports claimed that very few inspections were made. While he congratulated the State party on its extensive efforts (paras. 37-40 of the report) to improve the situation of women workers, particularly regarding child-care facilities, he would like to know if supervision was being intensified to improve women's situation, which, as the delegation had candidly admitted, was still vastly inferior to that of men. Given the small number of court cases, it was important to discover how the inspectorate system was working, not only in large companies but also in smaller ones such as hotels and shoe and garment factories, which were highly exploitative of women.

33. Mr. TEXIER noted from the delegation's replies that the authorities had no intention of ratifying ILO Conventions No. 2 concerning unemployment, Nos. 29 and 105 on forced labour, and Nos. 87 and 88 on trade-union rights and collective bargaining. The issue had been raised during consideration of Korea's initial report, since which time the ILO had issued a formal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covering four area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elimination of forced labour,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d failed to ratify many of those fundamental rights, on the ground that the country's legislation was not consistent with such action. The Committee would be forced to recommend that the State party should bring its legislation into line with those important ILO conventions.

34. Concerning article 6 of the Covenant, the country had a relatively low unemployment rate of some 4 per cent. How had part-time or seasonal work, which was very common in Korea, been taken into account in calculating that statistic? Similarly, a great deal of space had been devoted in the second periodic report to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nd most cases brought before it in 1999 had concerned alleged wrongful dismissal. In addition to that Commission's work, did judges monitor the legality of individual or collective dismissals?

35. He asked whether the minimum wage really allowed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enjoy a decent living, as recommended in article 7. The figures for 2000 showed that the minimum wage was 1,875 won (US$ 1.5), which could not possibly suffice. Was the minimum wage regularly revised when, for example, inflation was high or the cost of living rose? On the question of trade-union rights, it appeared from the delegation's replies and from information supplied by Korean NGOs that little had changed, despite the strictures contained in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untry's initial report, and that the rights of a great many civil servants, especially teachers, were denied. The existing case law revealed a sort of criminalization of the right to strike. He had himself seen television images of strikes being brutally put down by police in Korea. Even if the strikers were themselves violent, they had a legitimate right to strike. Many people had also been imprisoned simply for going out on strike, one as recently as February 2001. He therefore wished to know whether strikes were seen as political by the authorities. Surely protests against the restructuring of an industry were not political, but solely an attempt to protect workers' rights?

36. Mr. CEASU said that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ad adopted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employment, including the National Constitution, ILO Convention No. 100,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and the amended 1987 law, there was still a great disparity between the wages paid to men and those paid to women. It had been stated that persons alleging discrimination could take their cases to court but, where employers contravened employment law, was that sufficient? Should the authorities themselves not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parties in violation of the law?

37. Quoting paragraph 36 of the report, he said that although employers had been urged to remove any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regard to recruitment, hiring, wages and retirement, the system in place was still inadequate. Korean legislation should allow labour inspectors and governmental authorities to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on those violating employment legislation.

38. Turning to the subjec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he said tha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uch accidents was pleasing but that the data on occupational diseases were ambiguous. Table 17 indicated that the percentage of workers with industrial diseases had been falling year by year but that the number of workers suffering from ordinary diseases had increased from 3.21 per cent in 1991 to 6.12 per cent in 1996. What was the explanation for that increase and had certain occupational diseases in fact been categorized as ordinary diseases?

39. Mr. WIMER-ZAMBRANO said that since 1995 the Committee had questioned the restrictions placed on trade union rights for teachers. Although information had been provided on

the relevant legislation, no explanation had been offered as to why the restrictions were not lifted. Was there in fact an underlying political reason? If so, it should be brought to the surface. In the political sphere, the most combative sector in society was represented by students and teachers tended to be bracketed with them. Was that in fact the reason for the national trade union restrictions imposed?

40. Mr. GRISSA requested clarification on how the Republic of Korea distinguished between lawful and unlawful strikes. Similarly, the term "irregular workers" should be defined. In the statistics provided reference had been made to the salaries paid to such workers, for example those in the medical profession. Did the term "irregular" relate to the number of hours worked or was it synonymous with the more common term "underemployed"? How many irregular employees were there, in relation to regular employees, and how did that affect the incomes of irregular employees?

41. Mr. MARTYNOV welcomed the fact that the Minimum Wage Act had been expanded to cover all workplaces,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It would be interesting to know whether all eligible workers actually received the minimum wage;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only 2.1 per cent of them did so. Were any government measures taken to enforce the Act?

42. The statistics relating to industrial accidents stopped in 1999, although, according to certain sources, the number of occupational injuries had risen by 25 per cent and the number of deaths by 10.3 per cent in the year 2000. Those increases had been attributed to the government's rescinding at least 27 industrial safety rules and to the curtailment of enterprise safety inspections. Did the Government intend to address the problem and, if so, how?

43. Mr. AHMED said that, although plentiful information had been provided on working conditions and on employment of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few or no data had been forthcoming on agricultural workers. It was true that a population imbalance existed as a result of the flight of workers from the countryside to urban industrial centres. What percentage of workers remained in the countryside and, of that number, how many were elderly? Similarly, how many women and children were there and what percentage of workers were small plot owners or land tenants? Did those tenants benefit from the provisions of the Minimum Wage Act? It would also be interesting to know whether specific laws existed for agricultural workers or whether the laws applicable to industrial workers also related to their rural counterparts. Did agricultural workers have their own trade union and who defended their wage, social security and health rights? In regard to agricultural techniques, was extensive or intensive farming practised?

44. As to food needs, it should be made clear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was self-sufficient and whether there was an adequate number of agricultural workers. Did they need to be supplemented by foreign nationals or were foreigners employed only in industrial centres?

45. Ms. Kyung-Wha KANG (Republic of Korea) said that detailed responses to the questions on agriculture, the right to work, the Minimum Wage Act, irregular workers,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 and occupational diseases would be provid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Labour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her delegation. In response to Mr. Wimer-Zambrano, she said that the restrictions placed on the trade union rights of teachers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tradition whereby those workers and other public servants were held in the highest esteem by the public. It would be very disturbing for the public to see such officials striking and disrupting public services. Given the strength of public feeling, restrictions were placed on the right of teachers and non-manual public servants to form trade unions. However, the Tripartite Commission was moving towards greater readiness to accord such rights to both groups.

46. Regarding Mr. Texier's suggestion that strikes were seen by the Government as politically motivated and therefore considered unlawful, she said that the full rights of trade unions were guaranteed insofar as their actions were lawful and non-violent, in accordance with the written rules governing strikes and collective action. The treatment of strikes by the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was in no way politically motivated. Further, the Government assumed that the motivation on the part of striking workers was economic rather than political, representing a response to the restructuring process, introducing labour market flexibility, which had been set in motion on the basis of the consensus reached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as a result of which lay-offs had occurred. As to the violent police crackdown on the strikes by motor industry workers, that was an isolated case caused by a spur-of-the-moment reaction. Local and high-level police chiefs had been dismissed as a result and the police brutality which had occurred was inexcusable.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the clash had occurred after a three-hour stand-off following which the police had been provoked by a trade-union leader. Investigations into the matter continued. The incident had made the authorities more determined than ever to root out violence and nurture civility and mutual respect between citizens.

47. Mr. Hae-Young CHUNG (Republic of Korea) said that, with regard to employment equality for women and government measures to promote it, Ministry of Labour inspectors had visited workplaces to give advice and eliminate any anxiety as to women being laid off before men. A total of 534 workplaces had been inspected in 1999 and 793 in 2000. Such activities would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and twice-yearly inspections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laid off owing to restructuring, local labour offices had set up desks to receive reports from females alleg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Women's organizations and NGOs had opened a total of 10 advisory centres for employment equality throughout the country. Workplace childcare centres had also been established with government funding.

48. In response to Mr. Ceausu's question about employment equality and differences in wage levels for men and women, he said that the 46 local labour offices had used inspectors to investigate cases of alleged discrimination and, where appropriate, the employers concerned had been sanctioned. As to the statistics on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and ordinary diseases, more time was needed to provide an answer.

49. Although Mr. Texier had referred to the Government's failure to ratify a fundamental ILO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fully respected 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n 1998 and was committed to abiding by basic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nventions relating to forced labour and freedom of association was, however, difficult in the light of domestic legislation. Trade-union rights for public servants were being discussed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would be improved following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s of 1997, trade unions had been granted greater autonomy and government intervention had been reduced. Trade unions for teachers had been allowed and national trade-union pluralism had been manifes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Union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committed to enhancing their rights in the future. Trade union membership was a matter of free choice.

50. Unemployment statistics were calculated by the independent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were compiled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Where temporary and seasonal workers were covered by such standards, they were included in the published figures.

51. In answer to Mr. Texier's ques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the unfair lay-offs which had occurred were dealt with by university professors of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together with judges and attorneys.

52. Minimum wage levels were regularly revised by a minimum wage deliberation committee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labour, employers and public interests. The distinction between lawful and unlawful strikes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the range of issues which could be introduced by trade unions into collective bargaining was similarly regulated. The introduction of any other issues was considered unlawful. The term "irregular workers" was currently under discussion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but it was generally taken to include part-time and temporary workers as well as contractual employees.

53. Ms. Kyung-Wha KANG (Republic of Korea) reiterated, in regard to the police brutality committed against striking motor industry workers, that such force was unpardonable. Meanwhile, although an overall picture of what had happened had been obtained, the details

were still sketchy.

54. On the minimum wage, the current level stood at 410,000 won, approximately US$ 320.

55. Responding to Mr. Ahmed, she said that agriculture was a declining industry but that most households in that sector were treated in the same way as self-employed workers in that they wer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schemes and other provisions. There were no large agricultural enterprises employing farm labourers and no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 was an increasing perception, however, that such workers might be required as the national population grew older, so the introduction of a foreign workers' permit system was being given serious consideration.

56. Mr. TEXIER welcomed Ms. Kyung-Wha Kang's condemnation as inexcusable of the recent police brutality during strike action. Nevertheless, his impression was that such action against trade unionists was fairly commonplace, and he urged vigilance to ensure that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strike was not abused. He noted that the argument advanced by the delegation, namely the need to take account of cultural traditions and the high esteem in which teachers were held, was identical to that criticized by the Committe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1995 as "a wholly unacceptable basis on which to defend the excessive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significant sectors of the Korean society to enjoy the basic right to belong to unions of their choice".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mmediate amend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at regard had clearly failed. He urged the Government to think through the implications of article 8 and to ensure that progress had been made by the time of the next report.

57. Ms. Kyung-Wha KANG (Republic of Korea),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action taken in the previous five years had not met in full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in 1995, was anxious to correct the impression that no progress at all had been made. A law had been enacted to legalize teachers' unions and give them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ough admittedly not to collective action, and the Government was working towards allowing union activity for civil servants.

58. The CHAIRPERSON invited Committee members to comment on items 21 to 27 of the list of issues.

59. Mr. RIEDEL welcomed the measures taken to expand and consolidate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protect the basic livelihood of the underprivileged. He wondered whether the extens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and Employment Insurance to all persons in full-time employment had been effective and what percentage of workers were covered under those schemes. According to reports from NGOs, 44 per cent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ere estimated to b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schemes. What remedial action was the Government taking? Similarly, only 68.7 per cent of workers were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only 77 per cent by Employment Insurance, leaving a large section of the population without cover. With regard to health insurance, NGOs had reported that co-payment by patients of medical expenses amounted to 70 per cent for outpatient, and 47 per cent for inpatient care. Against that background, how effective was the new medical assistance scheme and how did it relate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ince an insufficiency of labour inspectors appeared to be a factor in the high percentage (68.7 per cent) of workplaces not contracting in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cheme, he requested figures on the size of the inspectorate and recommended fuller treatment of the subject in the next report.

60. Mr. PILLAY said that, according to his information, poverty in the country had worsened and one fourth of the population was living below minimum standard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not performing efficiently to the extent that the cash benefits provided were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eligibility criteria were set too high; only 7 per cent of the national budget was spent on social welfare compared with 17 per cent on defence; and social insurance did not cover temporary and part-time workers,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nd the self-employed. On paid maternity leave, he asked whether the Government intended to extend the period from 60 days to 14 weeks, in accordance with the ILO Convention. Lastly, he drew attention to two sources of information suggesting a disparit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birth rates. While acknowledging that some progress had been made towards implementing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he reminded the delegation that all the concerns he had just raised had been expressed by the Committee in 1995.

61. Ms. BARAHONA RIERA wondered about the large number of casual workers, including a high percentage of women, who had not paid into a pension scheme. What was their economic situation when they could no longer work? What action did the Government plan to take in that regard? Welcoming the revision of the Family Act, she asked whether both partners had the same rights in respect of the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and whether provisions in the Act might require amendment on account of civil or penal implications which discriminated against women.

62. Mr. SADI deplored the hasty treatment in the Government's replies of child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which he felt betrayed a lack of interest and compassion and failed to reflect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He would appreciate some statistics on the scale of the problem and information on the root causes and how the Sexual Protection for Adolescents Act functioned.

63. Mr. RATTRAY said it was not clear to him on what basis persons became eligible for assistanc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hat constituted the poverty line and whether the figures of US$ 166 and US$ 148 per month mentioned in the written reply to item 21 were adequate to meet basic subsistence needs. Lastly, he asked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were gender-neutral.

64. Ms. Kyung-Wha KANG, replying to the previous speaker first, said that although the number of labour inspectors was insufficient, not least on account of the current tight fiscal policy, the general trend was upwards.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was not gender-neutral. As far as she knew, no cases of violence against men had been reported, but she did not rule out future amendment of the Act.

65.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provided for a needs-based system designed to make up for the shortfall between a person's income and a minimum level of living costs adjusted to reflect prices and economic conditions, regardless of age and whether or not the person was working. The average subsidy paid at the launch of the system was about 200,000 won, with 1.54 million beneficiaries, a substantial increase over the previous system.

66. Mr. Suk-Kya LEE added that there were two opposing views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beneficiaries: the un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ought selection was too strict and benefits too low; industry associations thought the minimum cost of living was too high compared with the minimum wage and could act as a deterrent to work. After extensive consultation, the Government had set the eligibility criterion at a monthly income of less than 960,000 won and assets of less than 34 million won.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eliminating any loopholes in the system which might leave people in need and unprotected.

67. Ms. Kyung-Wha KANG, replying to the question put by Mr. Sadi,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fully realized the gravity of the problem of child abuse and prostitution. Children were protected by the Criminal Code,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Sexual Protection for Adolescents Act. In addition to punishment under the law, personal information on the perpetrators was now disclosed as a deterrent. An emergency call service was in operation. The police were obliged by law to respond to the report of a crime immediately and to arrange for medical treatment and protection.

The meeting rose at 1 p.m.

©1996-2001

NATIONS UNIES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Distr.

GENERALE

E/C.12/2001/SR.14
18 mai 2001

Original: FRANCAIS

Compte rendu analytique de la 14ème sánce : Republic of Korea. 18/05/2001. E/C.12/2001/SR.14. (Summary Record)

COMITÉ DES DROITS ÉCONOMIQUES, SOCIAUX ET CULTURELS

Vingt-cinquième session

COMPTE RENDU ANALYTIQUE DE LA 14ème SÉANCE

tenue au Palais Wilson, à Genève,
le mardi 1er mai 2001, à 15 heures

Président : M. RIEDEL (Vice-Président)

puis : Mme BONOAN-DANDAN (Présidente)

SOMMAIRE

EXAMEN DES RAPPORTS :

a) RAPPORTS PRÉSENTÉS PAR LES ÉTATS PARTIES CONFORMÉMENT AUX ARTICLES 16 ET 17 DU PACTE (*suite*)

- Deuxième rapport périod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suite*)

La séance est ouverte à 15 heures.

EXAMEN DES RAPPORTS :

a) RAPPORTS PRÉSENTÉS PAR LES ÉTATS PARTIES CONFORMÉMENT AUX ARTICLES 16 ET 17 DU PACTE *(suite)*

Deuxième rapport périod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1990/6/Add.23); liste des points à traiter (E/C.12/Q/REPOFKOR/2); profil de pays (E/C.12/A/REPOFKOR/1); réponses écrites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ocument distribué en séance en anglais seulement)

(HR/CESCR/NONE/2001/6) (*suite*)

1. Sur l'invitation du Président, la délégation coréenne reprend place à la table du Comité.

2. Le PRÉSIDENT invite la délégation coréenne à répondre aux questions laissées en suspens à la séance précédente.

3.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répondant à plusieurs questions, sur les compétence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confirme que celle-ci est habilitée à mener des enquêtes sur les cas d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commises par des membres des services de police et des forces armées. Par ailleurs, elle précise que, contrairement à l'information donnée au cours de la séance précédente, la loi sur la répression de la violence sexuelle vise principalement les femmes tandis que la loi sur la prévention de la violence familiale vise tous les membres de la famille, c'est-à-dire les conjoints, les enfants, les personnes âgées, etc. Toutefois, les foyers d'accueil temporaire mis en place en application de ces textes n'ont encore jamais accueilli de victimes de sexe masculin. En ce qui concerne les effectifs des secteurs agricole et forestier, Mme Kang estime à 2,2 millions le nombre de personnes qui bénéficient de la même protection sociale et des mêmes droits que l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des zones urbaines.

4. En ce qui concerne le divorce, Mme Kang précise que, selon une jurisprudence récente, l'épouse se voit accorder 30 % des biens acquis au cours du mariage. Quant à la montée du taux de divorce, elle s'explique peut-être par l'amélioration de la condition féminine et l'augmentation du pouvoir économique des femmes. En effet, la femme coréenne d'aujourd'hui, grâce à son indépendance financière, n'hésite plus à sortir d'une union matrimoniale qui ne la satisfait plus. S'agissant du congé de maternité, le Gouvernement négocie avec toutes les parties prenantes pour porter sa durée de 60 à 90 jours avec paiement du salaire intégral. Même si ces négociations aboutissent, cette durée restera inférieure aux 14 semaines recommandées dans la Convention révisée de l'OIT sur la protection de la maternité, ce qui signifie que le Gouvernement coréen n'est pas encore en mesure de ratifier cet instrument. Mme Kang reconnaît avec les membres du Comité que la pratique consistant à identifier le sexe des fœtus conduit à des avortements non médicalisés et est responsable d'un taux élevé de mortalité maternelle. Le Gouvernement tente donc d'y mettre fin en interdisant au personnel médical de pratiquer ce type d'examen, mais il n'a ni les moyens financiers ni les ressources humaines pour surveiller toutes les cliniques du pays.

5. Mme LEE (République de Corée) ajoute que l'élimination de cette pratique passe sans doute par un changement de mentalité chez les Coréens. C'est pourquoi le Ministère de l'égalité entre les sexes a formulé une politique dont les deux axes principaux sont l'éducation et la sensibilisation. Dans le domaine éducatif, il encourage une formation non sexiste des agents de l'État, des fonctionnaires de police et des enseignants. Quant aux programmes de sensibilisation à la problématique de la parité des sexes, ils sont présents dans toutes les manifestations sportives et culturelles qui marquent la semaine de la femme, organisée tous les ans du 1er au 7 juillet.

6.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reconnaît que la prostitution et l'exploitation sexuelle des enfants constituent des problèmes d'une gravité croissante, qu'il faut peut-être mettre sur le compte des penchants matérialistes de la nouvelle société coréenne et du développement de l'Internet. Pour y faire face, les autorités ont promulgué, en l'an 2000, la loi sur la prévention de l'exploitation sexuelle des jeunes, qui prévoit, pour les auteurs d'actes de cette nature, de lourdes peines et la divulgation de leur identité, et pour les victimes, des programmes spécifiques d'orientation et de réadaptation. En outre, une commission dépendant directement du Premier Ministre a été créée et chargée de la lutte contre ce phénomène et de la protection de jeunes. Répondant à la question de savoir si le Gouvernement saisit les tribunaux en cas de discrimination sexuelle, Mme Kang précise que selon le droit coréen, il appartient à la personne qui s'estime victime de cette discrimination d'intenter une action en justice. Le rôle du Gouvernement se limite à une aide juridictionnelle moyennant le versement d'une somme modique.

7. M. Hae-young CHUNG (République de Corée) précise que l'affiliation à l'assurance contre les accidents du travail et au système de garantie de l'emploi est obligatoire, depuis le 1er juillet

2000, pour les salariés de toutes les entreprises, quelle que soit leur taille. Il est intéressant de noter que l'employé victime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perçoit systématiquement toutes les prestations auxquelles il a droit même si son employeur ne s'est pas acquitté de ses cotisations. Quant au système de garantie de l'emploi, il comprend trois volets, à savoir l'assurance chômage, le programme de perfectionnement des aptitudes professionnelles et le plan de sécurité de l'emploi. Sur les 8,7 millions d'employés des entreprises de toutes tailles, 6,7 millions y sont affiliés, ce qui représente un taux de 77 %. Certes, les taux d'affiliation restent faibles parmi les petites entreprises comptant de un à quatre employés, mais des améliorations sont attendues depuis que le Gouvernement a renforcé les effectifs des services chargés de la collecte des cotisations auprès des entreprises.

8. M. LEE (République de Corée) reconnaît que la part des frais médicaux à la charge de l'assuré coréen est élevée par rapport à ce qu'elle est pour les assurés des autres pays membres de l'OCDE. Il tient toutefois à souligner que le montant de la prime versée par l'assuré coréen est modique : 3,4 % du revenu mensuel dans le cas des salariés et 35 000 won par mois pour l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Selon les chiffres de l'an 2000, la franchise correspond à 25 % des frais d'hospitalisation et à 61 % du coût total des services ambulatoires.

9.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dit que le budget de la sécurité sociale peut paraître faible comparé à celui de la défense. Il ne faut cependant pas oublier que la situation qui prévaut dans la péninsule coréenne nécessite des dépenses militaires élevées. Cela dit, rapporté au PIB, le budget de la sécurité sociale est en constante augmentation, s'établissant à un peu plus de 11 % en 1998, malgré la grave crise financière qu'a connue le pays. En ce qui concerne le régime national des retraites, 16,6 millions de personnes, soit 60 % de la population active âgée de 16 à 60 ans, y étaient affiliées en l'an 2000. Des efforts restent à faire pour améliorer la couverture parmi l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qui, probablement en raison de la crise économique, n'acquittent pas toujours leurs cotisations. S'agissant du salaire minimum, il est aujourd'hui de 410 000 won et il doit être versé à tous les travailleurs, à l'exception des employés dont le contrat de travail a été signé avant l'entrée en vigueur de ce nouveau salaire minimum. Enfin, Mme Kang précise les conditions régissant les licenciements : ceux-ci ne doivent être décidés qu'en dernier recours et la notification doit être faite 60 jours à l'avance. Depuis 1998, on constate une baisse lente mais régulière du nombre des travailleurs licenciés.

10. M. WIMER ZAMBRANO, citant le paragraphe 143 du rapport, demande des précisions sur la politique suivie par le Gouvernement coréen pour lutter contre la prostitution et insérer les anciennes prostituées. Quel est le cadre juridique qui régit l'exercice de la prostitution ?

11. M. CEAUSU, prenant note que 16 600 000 personnes âgées de 16 à 60 ans sont couvertes par le système d'assurance maladie coréen, souhaite savoir si les enfants de moins de 16 ans sont automatiquement assurés avec leurs parents.

Articles 11 et 12

12. Le PRÉSIDENT invite la délégation coréenne à répondre aux questions posées dans la liste des points à traiter au sujet des articles 11 et 12.

13.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répond que ce sont en fait 40 % des personnes ayant de faibles revenus qui vivent en dessous du seuil de la pauvreté et non 40 % de la population totale.

14. Concernant les expulsions, Mme Kang confirme que, conformément à ce qui est dit au paragraphe 225 du rapport, aucune personne ne peut être expulsée sans se voir offrir la possibilité d'être relogée ou d'être indemnisée de manière adéquate. Il existe dans le pays 152 centres d'hébergement temporaire de sans-abri qui fournissent de la nourriture et des vêtements, prodiguent des soins de santé physique et mentale, notamment aux personnes handicapées, et mettent en œuvre des programmes de réinsertion.

15. Le programme en faveur des groupes cibles évoqué au paragraphe 223 du rapport a été abandonné en raison de l'instauration d'un nouveau système d'aide sociale, destiné à garantir la satisfaction des besoins essentiels, qui couvre aussi les anciens bénéficiaires du programme, à savoir les personnes qui ne sont pas aptes à travailler.

16. Enfin, au sujet de l'assistance médicale dont bénéficient les réfugiés, Mme Kang précise que les demandeurs d'asile travaillent et bénéficient donc de la même protection que celle qui est accordée aux autres travailleurs. C'est pourquoi les autorités n'ont pas jugé nécessaire de mettre en place des centres d'accueil.

17. M. PILLAY demande des éclaircissements à la délégation sur la question des expulsions, dont il est question dans l'Observation générale No 7 du Comité. Selon certain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ONG), la loi sur la rénovation urbaine ne s'appliquerait pas aux locataires dont les logements sont démolis par des promoteurs privés. En outre, le tableau reproduit dans les réponses écrites fait apparaître que sur 35 000 personnes expulsées, seules 29 000 ont été relogées temporairement ou indemnisées. De même, certaines ONG affirment que les sans-abri, dont elles estiment le nombre à 5 000, ne sont pas accueillis dans des centres d'hébergement. Elles contestent aussi les chiffres donnés par la délégation concernant les bénéficiaires du nouveau système d'aide sociale. Constatant que le loyer représente 30 % des dépenses totales des ménages, M. Pillay demande s'il existe des logements à loyer modéré. Il souhaite que la délégation illustre par des exemples la situation du logement et voudrait savoir quelles mesures ont été prises par le Gouvernement pour remédier à ce problème.

18. M. MALINVERNI, prenant note que l'application du système de protection sociale aux étrangers, y compris aux demandeurs d'asile, est basée sur le principe de réciprocité, demande si les personnes originaires de pays avec lesquels aucun accord bilatéral n'a été signé reçoivent une aide sous une forme ou sous une autre. Il cite notamment le cas d'un demandeur d'asile ressortissant du Myanmar qui souffrirait d'une maladie rénale grave et ne recevrait aucune assistance de la part du Gouvernement coréen pour faire face au coût de son hospitalisation. Il souhaiterait en outre avoir des informations sur la collaboration du Gouvernement coréen avec le Haut-Commissariat pour les réfugiés (HCR).

19. Concernant le remboursement des frais médicaux, M. Malinverni dit que, selon des ONG, une part importante des soins ne serait pas prise en charge par la sécurité sociale. Il demande des précisions sur les établissements hospitaliers, dont 90 % seraient gérés par le secteur privé et 10 % par le secteur public. Une telle disproportion a-t-elle des incidences sur l'accès aux soins hospitaliers ? Quelle est la part du budget affecté à la santé, à l'exclusion des assurances sociales ? Celui-ci, d'après certaines informations, serait extrêmement faible et aurait baissé de 1996 à 1999.

20. M. TEXIER, rappelant l'Observation générale No 7, souhaiterait savoir quelle est la procédure suivie lors d'expulsions collectives. Y a-t-il concertation avec la population concernée ? Dans le cas d'expulsions individuelles, y a-t-il négociation ? Les tribunaux sont-ils saisis ? Enfin, M. Texier demande quel est le nombre des sans-abri. Ces derniers bénéficient-ils d'une protection légale ? Quelles mesures spécifiques sont prises pour les loger ?

21. M. THAPALIA demande un complément d'information sur plusieurs points. Quels sont, en Corée, les facteurs de vulnérabilité à la pauvreté ? Quelle est la proportion de travailleurs ayant de faibles revenus ? Quel est le coût minimum de la vie ? M. Thapalia souhaiterait en outre avoir des données, si possible ventilées par sexe et par nationalité, sur les revenus des groupes défavorisés et savoir pourquoi le nombre de bénéficiaires du système d'aide sociale destiné à garantir la satisfaction des besoins essentiels a été multiplié par trois entre 1999 et 2000.

22. M. CEAUSU demande des éclaircissements sur le nombre de ménages coréens, les chiffres présentés au paragraphe 188 du rapport ne concordant pas avec ceux indiqués au paragraphe 229. Concernant le droit à la santé, il voudrait savoir en quoi consiste le programme de prévention du sida. Quelles sont les modalités de dépistage des séropositifs ? Des mesures sont-elles prises pour prévenir toute discrimination contre les malades ? Que font les autorités pour lutter contre le tabagisme, en particulier chez les enfants d'âge scolaire ?

23. Constatant que l'assurance médicale représente plus de la moitié des dépenses de santé publique, M. Ceausu demande si les tarifs des soins pratiqués et les honoraires des médecins sont

contrôlés. Étant donné qu'ils doivent prendre en charge une partie des dépenses médicales, les patients n'hésitent-ils pas à consulter un médecin ou à se faire hospitaliser ?

24. M. WIMER ZAMBRANO souhaite avoir des précisions sur le type de campagne de prévention menée dans le cadre du programme de lutte contre le sida. Concernant l'avortement, il demande si la législation civile et pénale a évolué. Quelles sont les tendances qui se font jour au sein de la société et du Gouvernement ?

25. S'agissant du droit à l'éducation, M. Wimer Zambrano demande si les autorités garantissent aux fils d'immigrants, qu'ils soient en situation régulière ou irrégulière, l'accès à l'enseignement primaire et selon quelles modalités.

26. *Mme BONOAN-DANDAN prend la présidence.*

27. M. ATANGANA souhaite savoir si les malades atteints du sida sont soignés gratuitement ou doivent prendre en charge une partie du coût de leur traitement. Il demande en outre si un centre pour le cancer a été effectivement mis en place en 2000. Enfin, il voudrait connaître les mesures que les autorités prennent pour lutter contre l'endémie de lèpre qui sévit dans les régions reculées.

28. M. RIEDEL souhaite avoir des précisions sur la fourniture de médicaments essentiels qui, conformément à l'Observation générale No 14 (E/C.12/2000/4), constitue une obligation fondamentale de l'État partie. Concernant les dépenses de santé publique, il voudrait connaître les raisons de l'augmentation considérable des dépenses d'assurance et d'aide médicales ainsi que de la baisse sensible de la part allouée non seulement aux depenses de santé, mais aussi à l'alimentation et aux médicaments.

29. Citant le paragraphe 269 du rapport relatif à la santé mentale, M. Riedel souhaite savoir qui administre les centres de soins communautaires et qui décide des modalités de traitement des patients. Existe-t-il des organismes de contrôle ? Les tribunaux sont-ils saisis en cas de conflit ?

30.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répond que les dépenses de santé publique sont passées de 1,8 milliard de dollars en 1998 à 2,5 milliards en 2000 car de nombreux Coréens affiliés au régime de protection sociale ont connu de graves difficultés financières suite à la crise asiatique de 1997. Les pouvoirs publics ont, en conséquence, dû leur venir en aide. Actuellement, 20 % des frais médicaux et d'hospitalisation sont à la charge du patient, ce qui est raisonnable compte tenu de la situation économique du pays.

31. Pour ce qui est du traitement du cancer, un centre, géré et financé par l'État, est en effet ouvert depuis peu près de Séoul. Tous les districts administratifs disposent par ailleurs de registres recensant les lépreux. Ceux-ci reçoivent des soins médicaux gratuits et peuvent demander à être transférés dans des centres spécialisés s'ils le souhaitent. Quant aux médicaments essentiels, ils sont distribués gratuitement ou à des prix très bas aux centres de santé publics ruraux, dont le nombre est en constante augmentation. Enfin, la République de Corée ne dispose pas de centres médicaux particuliers pour les immigrants car ceux-ci sont bien souvent soignés sur leur lieu de travail.

32. S'agissant du VIH/sida, la République de Corée comptait, en 2000, 1 280 personnes atteintes du virus, dont 162 femmes. Depuis, 52 sont décédées. Les tests de dépistage sont gratuits mais les traitements, couverts par le système d'assurance maladie, demeurent à la charge du patient. Pour tenter d'enrayer la progression du mal, une loi a été adoptée en novembre 1997 : elle a notamment institué un système d'enregistrement obligatoire des personnes séropositives. Des cours d'éducation sexuelle sont désormais dispensés à tous les niveaux d'enseignement et de nombreuses campagnes d'information et de sensibilisation ont été organisées par le Ministère de la santé sur cette maladie.

33. Passant à la question de la prostitution, Mme Kang explique que cette activité est illégale en République de Corée et réprimée par le Code pénal. La législation en vigueur dans ce domaine devrait toutefois être amendée afin d'assurer une meilleure protection aux femmes qui se livrent à ce commerce illicite et de favoriser leur réinsertion dans la société.

34. Enfin, s'agissant des expulsions, Mme Kang déclare ne pas avoir connaissance de cas de personnes expulsées de leur logement sans indemnisation. Bien que cette pratique soit tout à fait illégale, de tels cas peuvent se produire à l'insu des autorités. Le Comité pourrait-il donc informer la délégation de cas précis dont il a eu connaissance ?

Articles 13, 14 et 15 du Pacte

35. La PRÉSIDENTE invite la délégation coréenne à répondre aux questions 35 à 38 de la liste des points à traiter.

36. S'agissant du droit à l'éducation,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explique que son pays n'est pas encore en mesure d'assurer l'entière gratuité de l'enseignement secondaire en raison du fardeau extrêmement lourd, environ 3,4 milliards de dollars É.-U. par an, qu'une telle politique ferait peser sur l'économie nationale. Le Gouvernement a donc opté pour une démarche graduelle en subventionnant notamment les études des enfants de familles à faible revenu. L'éducation aux droits de l'homme fait partie des programmes d'enseignement primaire et secondaire et constitue un principe général qui est inscrit dans les programmes d'études scolaires et extrascolaires.

37. Passant à la censure, Mme Kang indique que le Gouvernement coréen ne censure, en principe, aucune activité culturelle ou éducative. Un Comité pour la promotion des arts du spectacle a été créé en remplacement du Conseil d'éthique. Organe non gouvernemental et indépendant, il est chargé d'examiner le contenu des différents spectacles, films, disques et vidéos et de leur appliquer un système de classification qui vise à protéger notamment les enfants et les jeunes contre des messages ou des images à caractère violent ou pornographique.

38. M. HUNT remarque qu'il y a un net déséquilibre entre les fonds alloués à l'enseignement public, qui représenteraient 4,4 % du PIB coréen, c'est-à-dire un chiffre nettement inférieur à la moyenne des pays membres de l'OCDE, et les dépenses de l'État affectées à l'enseignement privé, 2,94 % du PIB, soit un chiffre très supérieur à la moyenne des pays membres de l'OCDE. De plus, selon un rapport de la Commission nationale coréenne pour l'UNESCO, le problème de l'enseignement en République de Corée résiderait dans le financement insuffisant du secteur public, ce qui le rendrait déficient et contraindrait les parents à scolariser leurs enfants dans des établissements privés. M. Hunt estime que ce déséquilibre peut porter préjudice aux familles désavantagées et explique peut-être pourquoi le pourcentage d'étudiantes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upérieur est inférieur à celui des hommes. Notant en outre que les frais d'inscription dans les universités ont considérablement augmenté depuis quelques années, M. Hunt s'interroge sur le point de savoir comment l'État partie concilie cette réalité avec l'article 13.2 c) du Pacte qui recommande l'instauration progressive de la gratuité de l'enseignement supérieur. L'État partie affirme en outre que l'éducation aux droits de l'homme fait partie du programme officiel d'enseignement, mais les enseignants reçoivent-ils une formation spécialisée dans ce domaine ?

39. M. MARCHAN ROMERO se félicite que la République de Corée ait déclaré le nouveau millénaire "Millénaire de la culture" et qu'elle s'efforce de rassembler toute la population autour de ce concept. Il souhaite savoir si le Gouvernement entend créer un consensus au niveau national uniquement ou s'il a au contraire l'intention de l'élargir à d'autres cultures dans un souci de pluralisme et d'universalité. Quoi qu'il en soit, le Gouvernement a-t-il fait en sorte d'associer à cette vaste entreprise les groupes les plus vulnérables de la société, tels que les femmes, les handicapés, les personnes vivant dans des zones reculées ou encore les minorités. Enfin, la Corée a-t-elle prévu de lancer un programme de réunification culturelle avec la Corée du Nord ?

40. M. Marchan Romero signale que le Fonds pour la promotion de la culture et des arts a été créé en 1973 en vue d'appuyer les activités de création dans différents domaines et mieux faire connaître les arts d'une part, de renforcer la protection sociale des artistes d'autre part. Cette protection s'étend-elle à tous les artistes ou ceux-ci doivent-ils répondre à certains critères pour bénéficier de l'aide et de la protection du Fonds ? M. Marchan Romero voudrait aussi savoir s'il

existe un régime effectif de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 et, dans l'affirmative, s'il s'applique également aux artistes des régions rurales et reculées.

41. Si le Gouvernement dit ne pas exercer, en principe, de censure sur les activités culturelles et éducatives, il mentionne toutefois l'existence d'un système de classification applicable aux films, aux enregistrements vidéo et aux disques ainsi qu'aux spectacles auxquels participent des artistes étrangers et qui s'adressent à un public jeune. M. Marchan Romero déplore l'existence de critères préconçus pour la classification des différentes œuvres artistiques et considère que ceux-ci peuvent restreindre la liberté d'expression des artistes. La délégation peut-elle donner un complément d'information à ce sujet ?

42. M. RATTRAY se demande dans quelle mesure l'enseignement primaire est "obligatoire et accessible gratuitement à tous" au sens de l'article 13.2 a) du Pacte. La gratuité de l'enseignement primaire dont se prévaut la Corée comprend-elle la fourniture des manuels scolaires ou couvre-t-elle uniquement les frais d'inscription ? Pour ce qui est de l'enseignement secondaire, le fait que les frais de scolarité ne soient pas pris en charge par l'État n'a-t-il pas pour conséquence d'exclure les personnes les plus démunies ? Enfin, il semble que l'enseignement supérieur soit le domaine réservé du secteur privé, qui draine 96,6 % des élève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u premier cycle et 75 % des étudiants fréquentant l'université. L'accès à l'enseignement supérieur semble donc dépendre de la situation financière et de la possibilité ou non de contracter un prêt, ce qui explique que l'écart se creuse dans ce domaine entre les riches et les pauvres. Le Gouvernement entend-il prendre des mesures pour lutter contre ce phénomène ?

43. M. Rattray, soulignant qu'une multitude d'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upérieur jouissent d'une grande autonomie, se demande si le Gouvernement leur impose des normes de qualité minimales afin que les étudiants diplômés possèdent, à leur sortie, un bon niveau d'études.

44. M. MARTYNOV, constatant que le Gouvernement a décidé d'instaurer progressivement la gratuité de l'enseignement secondaire, demande s'il s'est fixé un délai pour la réalisation de cet objectif et s'il a l'obligation d'en rendre compte.

45. M. Martynov se félicite que le taux de scolarisation avoisine 100 % dans l'enseignement primaire, ce qui, en termes de pourcentage, est excellent. Quelle importance, en revanche, le Gouvernement attache-t-il à la qualité de l'enseignement primaire ? La délégation peut-elle fournir des informations sur la formation des maîtres et indiquer le nombre d'élèves par classe dans les zones urbaines et rurales ?

46. M. WIMER ZAMBRANO demande quelle importance est accordée aux langues régionales et minoritaires dans le pays. Sont-elle enseignées à l'école ? Enfin, existe-t-il un programme pour la préservation de ces langues ?

47. Mme KANG (République de Corée) répond qu'il n'existe pas dans son pays de langue minoritaire et que les quelques dialectes parlés dans certaines régions ne sont pas suffisamment éloignés de la langue nationale pour envisager de créer des programmes d'enseignement à part.

48. S'agissant de la censure, la République de Corée est consciente que la loi sur la sécurité nationale peut, dans certains cas, constituer une entrave à la liberté d'expression et à la liberté de la press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s libéraux font pression pour qu'elle soit abrogée. Le Gouvernement estime toutefois que la Corée étant toujours un pays divisé, on ne peut pas abolir cette loi purement et simplement. Mais pour empêcher qu'elle soit un prétexte à la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le Gouvernement envisage de la réviser. Dans l'intervalle, il a publié en 1998 et 1999 trois directives qui interdisent aux responsables de l'application des lois d'interpréter trop librement la loi sur la sécurité nationale.

49. Pour ce qui est du rapport entre le nombre de professeurs et le nombre d'élèves dans les villes et dans les campagnes, Mme Kang indique que les zones rurales ne sont absolument pas désavantagées, au contraire. En revanche, il arrive qu'il n'y ait pas suffisamment d'élèves et que des écoles doivent fermer.

50. À la question relative au degré de compétences des enseignants, Mme Kang répond que ces derniers doivent être en possession d'un diplôme délivré par un centre de formation des maîtres qui atteste qu'ils ont les connaissances et le niveau pédagogique requis pour enseigner. Le Gouvernement veille en outre à la qualité de l'enseignement en révisant et en mettant à jour régulièrement les programmes scolaires.

51. En matière d'accès à l'enseignement supérieur, Mme Kang dit que la sélection se fait non pas sur des critères financiers mais en tenant compte du niveau de connaissances, le système éducatif coréen étant effectivement très compétitif à cet égard. Selon elle, toute personne admise à l'université est prête à s'endetter pour poursuivre ses études. Elle explique ensuite que la hausse des frais d'inscription à l'université n'est que le reflet du taux d'inflation. Pour ce qui est de l'enseignement universitaire, l'État n'intervient aucunement dans la formulation des programmes et c'est aux universités elles-mêmes, qui jouissent d'une grande autonomie, qu'il incombe de décider de la qualité de l'enseignement qu'elles entendent dispenser à leurs étudiants.

52. S'agissant de l'instauration progressive de la gratuité de l'enseignement secondaire, Mme Kang rappelle que cette mesure ne concerne encore uniquement que le premier cycle dans les zones reculées et les îles. Dix-neuf pour cent des établissements visés bénéficient déjà de la gratuité qui devrait être étendue à l'ensemble du pays d'ici à 2004. Mme Kang reconnaît que la gratuité dans le deuxième cycle est elle aussi souhaitable mais, dans l'attente de pouvoir l'instaurer, le Gouvernement a déjà mis en place un système d'aide sociale par lequel il prend en charge les frais de scolarité des élèves issus de milieux défavorisés afin que ceux-ci ne soient pas exclus du système. À la question de savoir si l'enseignement primaire est entièrement gratuit, Mme Kang répond que les manuels scolaires sont distribués gratuitement et que seule une petite participation aux frais de cantine est demandée aux familles. En outre, dans le cadre du système d'aide sociale susmentionné, le Gouvernement prend en charge les repas des élèves issus des familles les plus démunies.

53. À la question de savoir si les petites filles puis les adolescentes sont désavantagées en matière d'accès à l'éducation, Mme Kang fournit des chiffres qui tendent à prouver que tel n'est pas le cas: les taux de scolarisation des filles sont quasiment identiques à ceux des garçons, et ce, à tous les niveaux d'enseignement. Bien sûr, il arrive encore que des familles à revenu modeste privilégient l'éducation de leurs fils à celle de leurs filles mais, d'une manière générale, les statistiques ne révèlent pas de différences significatives entre garçons et filles. Mme Kang souligne que son pays prend en compte l'article 13 du Pacte lors de l'élaboration de ses politiques de l'éducation. Enfin, elle indique que les programmes de remise à niveau des enseignants comportent une composante "droits de l'homme" et qu'un enseignement portant sur les droits de l'homme est dispensé aux enfants.

54. Mme Kang assure les membres du Comité que son pays fournira ultérieurement un complément d'information sur la stratégie culturelle adoptée par la République de Corée et sur la question d'un éventuel rapprochement culturel avec la Corée du Nord. Elle précise toutefois que l'idée d'un "Millénaire de la culture" traduit une volonté d'encourager le pluralisme, la tolérance et la diversité. L'article 22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stipule que "les droits des auteurs, inventeurs, scientifiques, ingénieurs et artistes sont protégés par la loi". À cette fin, la République de Corée a adopté une loi sur le droit d'auteur qui prévoit la possibilité pour l'État de rendre une ordonnance afin d'empêcher ou de faire cesser toute atteinte aux droits d'auteur. La loi prévoit en outre que des indemnités peuvent être accordées par décision judiciaire et que les coupables s'exposent à des sanctions.

55. Quant au Bureau chargé de la classification des œuvres audiovisuelles, il a pour mission de veiller à ce que les enfants ne voient pas de scènes trop violentes ou à caractère pornographique. Il lui incombe donc d'appliquer les critères de classification, qui peuvent, il est vrai, être empreints de subjectivité et entraver la liberté d'expression.

56. En conclusion, Mme Kang se félicite du débat constructif auquel a donné lieu l'examen du deuxième rapport périodique de son pays et assure les membres du Comité qu'elle fera part des commentaires et des observations qu'ils ont formulés à cette occasion.

57. La PRÉSIDENTE remercie la déléga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déclare que le Comité a achevé l'examen du deuxième rapport périodique de l'État partie.

La séance est levé à 7 h 55.

TOP | HOME | INSTRUMENTS | DOCUMENTS | INDEX | SEARCH

©1996-200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va, Switzerland

4월 30일 12차 회의, 5월 1일 13·14차 회의 정리

Dandan 의장: 한국정부의 제2차 이행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한 회의이다. 위원회의 질의(list of issues)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은 영어로 제출되어 있다

정의용 대사: 제2차 보고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행의 진전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가 위원회와 한국정부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촉진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한국민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을 환영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는 서로 나눌 수 없으며, 좋은 governance와 민주주의의 보장이 이 두 범주의 권리들을 증진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인권의 증진은 한국 정부의 국내, 국외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서 온 대표단이 발표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를 든다면, 노동보호의 대상을 확장,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했고, 여성부의 신설을 통해 여성 인권을 증진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월 저명한 인권활동가를 인권 대사로 임명했다. 박경서 대사, 정달호 인권사회국장, 강경화 심의관 소개 ..... 앞으로 강경화 박사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강경화: 김헌수(노동부), 이기순(여성부), 오낙영(외교통상부), 민만기(법무부), 이석규(노동부), 정해영(노동부), 조현해(여성부) 소개 .....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 부처 간의 협동 작업에 의해 이뤄졌다. 우리는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제2차 보고서와 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서는 한국 정부가 규약의 조항들과 1995년 최종견해에 따라 시행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는 1차 보고서 검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핵심적인 조치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직면한 한계와 도전을 설명될 것이다.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1990년대 후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는 갑자기 닥쳤지만, 위기의 원인은 오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기업과 금융 부문은 수 십년 동안 부패와 왜곡을 그 특징으로 했다. ..... (이후내용은 첨부된 모두발언을 참조)

<모두 발언에 대한 Comment>

- Sadi 위원: 한국정부가 IMF와 경제개혁, 경제구조조정에 대해 협상할 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직접적으로 답해달라

강경화: 한국정부가 IMF와 구제금융 등에 대해 협상할 때 규약상의 권리가 기본적인 원칙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내법들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규약의 원칙 및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규약에 담긴 정신은 IMF와의 협상 뿐 아니라 한국정부가 행한 국제기구와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존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Grissa 위원: 1998년 혹은 1999년 이후 이뤄진 많은 입법 조치들에 대해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데 그 법들이 규정하는 의무는 어떠한가? 어느 정도 그 조치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 혹시 책 속에만 있는 이론적인 것은 아닌가?

강경화: Grissa의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하자면, 채택된 법과 제도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그것들은 상당한 실효성을 갖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

Dandan 의장 : Grissa의 질문은 매우 많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항별로 심사해 가면서 답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Ahmed 위원: 위원회에 의해 예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던 몇 가지 주제가 모두 발언에는 빠져 있는 것 같다.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인구 불균형,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독거노인 문제, 초등교육만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규약 1, 2, 3조에 관하여>

강경화: 정부답변 발제(질의사항에 대한 정부 답변서 참조)

국내법상 지위

- Malinverni 위원: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해 질문하겠다. 국내법과 국제조약을 동일하게 다룬다는 것은 자칫 신법이나 특별법이 조약을 손상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헌법 시스템은 국내법에 대한 규약의 우월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헌법 6조는 19세기에는 수용가능하지만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헌법 6조는 국제법, 국제조약이 본질적으로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 Kouznetsov 위원 : 규약의 지위와 관련해, 1995년 1차 보고서 심사할 때도 많이 논의되었다. 지난 최종견해 7항을 보면,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국내법이 모두 규약에 부합한다고 정부대표가 말했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인 설명이다. 헌법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인권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포함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나라들에선 시민, 정치적 권리만이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 사회적 권리의 지위는 다르다고 생각하곤 한다. 한국정부도 그런가?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 이야기할 때, 두 범주의 권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1995년 위원회가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 상의 지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거의 7년이 지났다.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해 사법심판이 이뤄지는가? 물론 노동 분쟁은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을 것이다. 다른 경제, 사회적 권리들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면 옴부즈맨 등 다른 장치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
- Texier 위원: 현 한국의 법제 상황은 규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 내가 이 내용을 끊

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이미 Kouzetsov가 이야기했듯이, 지난 1차 보고서 심사 이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 Wimer 위원: Case by case라고 말했는데 조약의 지위가 모호하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혹은 집단이 어디에서 구제를 구해야 하는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조약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고 싶다.
- Pillay 위원: 국내법 상 조약의 지위가 어떠한지 명확하지 않다. 조약 그 자체로 자기집행적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국내법에 통합시키지 않고도 집행가능하다는 것인가?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그 뜻은 조약이 일반적인 국내법과 동일하다는 것인가? 그 말은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조약 비준 이후의 신법이나 특별법이 조약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가? Kouznetsov가 말했듯이, 지난 최종견해 16항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신/구법, 특별법 상관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5년 넘게 지나도록 왜 이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는가? 한국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인식하고 있는가? 조약의 모든 권리들은 각국에서 이행, 집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이것은 집행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국가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어떠한 법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을 보장하고, 조약의 의무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 대표의 계획은 무엇인가?
- Sadi 위원: 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을 갖는가?
- Ceausu 위원: 조약의 국내법 상 지위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좋은 해답이 나오기 힘들다. 만약 정부가 규약을 특별법이라 규정하거나, 규약을 비준한 후에 어떠한 국내법도 조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면 만족스러운 조건이 될 수도 있다.
- 강경화: 많은 위원들이 국내법과 규약의 관계 즉 국내법상 규약의 지위에 관해 질문했다. 지금까지 규약과 국내법이 상충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기 때문이며 또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규약이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 법제처는 규약과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규약과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둘째로, 국제조약을 가입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통해 국내법 중 조약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약을 비준한 이후에는 조약의 내용을 수용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 셋째로, 법원은 국내법을 규약 및 여타 국제조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게 해석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넷째로 법제처는 국제조약들이 국내법에 얼마나 잘 수용되어 있는지를 매년 검토한다. 이러한 다양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국내법과 규약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would be). 그러나 규약의 내용들은 헌법에 모두 완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국내법이 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절차 또는 관련 심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규약의 선택의정서 마련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메커니즘들이 규약의 사실상(de facto) 우위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외국인노동력 관련정책

- Malinverni 위원: 규약 2조와 관련해, 1998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법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다. 내 질문은 외국인의 지위와 관련해, 불안정한 지위의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규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 Wiemer 위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115개 보호소가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충분한가? 한국의 민간단체가 어려운 상황의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초라한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재 한국정부의 지원/보호 시스템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Rattray 위원: 한국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보호지침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인가?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인가?
- Ceausu 위원: (정부의 추가답변 5번에 관하여) 한국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민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처벌받는다고도 했다. 내 생각엔 한국법을 아는 고용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법을 잘 모를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발언문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들도 초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아동의 권리는 그들 부모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체류 지위가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의 권리들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하는 차원으로 국가가 접근해야 한다.
- Grissa 위원: 많은 한국민들이 외국에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경제학자로서, 인구 이동은 개발 성장의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인구의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Martynov 위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가?
-강경화: '이주노동자 보호에 관한 지침(1998)'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 지침은 노동부의 명령으로서 근로감독관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현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할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기적으로 불법체류노동자의 수가 감소될 것이다.

(Ceausus의 질문에 대해) 고용주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각지방노동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관련국내법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 관련내용의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Grissa의 질문에 대해) 우선 한국인 이주자들은 타국의 법에 따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러나 Grissa위원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한편, 한 나라의 출입국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입국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판단되며, 우리는 한국의 관련법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세계화의 현상과 함께 사람들의 대량이동(이주)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Grissa위원도 지적했듯이,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할 외국인노동허가제(foreign workers permit system)에 관련한 입법을 매우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노동허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의 권리

- Malinverni 위원: 난민에 대해,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인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100여 명의 난민신청자들 중 오직 1명의 에디오피아인만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 난민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1951년 난민협약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정부의 답변을 보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의 난민신청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적 난민 신청자는 아니지만 폭력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 예를 들어, 알제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부터 오는 사람들, 즉 직접적인 박해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의 희생자로서 폭력을 피해 자국을 탈출해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한국정부는 난민에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보면, 난민신청자에 대해 지위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2-3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생계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답해 주기 바란다.
- Texier 위원: 난민 지위 인정의 절차가 그다지 투명하지 않고, 다소 지나치게 엄격한 것 같다. 100여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다. 다른 한편, 난민신청자들이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 Ceasus 위원: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6개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후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어디로든 원하는 곳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들의 본국, 그들 주장에 따르면 박해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보내지

는가?

-강경화: (Malinverni의 질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난민을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난민협약과 의정서의 각 1조에 내용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난민정책은 UN협약을 기초로 한 것이다. Malinverni의원이 언급한 "새로운 종류의 난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국제조약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금년초 한국정부는 한 에디오피아인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우리 난민정책상의 변화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시작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인정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민인정심사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서울에 사무실을 열게 되었으며, 이는 난민과 난민신청인의 보호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위원회의 거부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면, 출입국관리법 72조 4항은 신청인이 거부결정 이후 7일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heusu의 질문에 대해) 우선 이 문제는 그들이 가고자하는 국가의 관련법규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다. 한편,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는 강제로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다.

- Malinverni 위원: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인정여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지원을 제공받는지에 관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

- 강경화: 난민신청인들 대부분은 다양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각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산재보상이 확실히 보장된다. 난민신청인들은 난민인정결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이주노동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인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본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금되고 사법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그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했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관련기관과 사업장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인권교육

- Sadi 위원: 실제로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지는지? 경찰, 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답해달라. 구체적인 예도 들어달라

-강경화: (Sadi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하기는 어렵다. 인권의 요소는 모든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 마련된 7차 개정 교과과정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대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교과서를 여기 위원들 앞에 펼쳐놓고 그 내용을 들어가며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국제인권은 정규과목중의 하나이다. 검사 및 법집행관들이 연수를 받는 법무연수원에서도 '여성과 법'이라는 과목이 강의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는 규약 및 여타 국제조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ILO조약 비준

- Kouznetsov 위원: 조약의 비준에 대한 질문이다. 온두라스를 보면, ILO의 사회조약(Socia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았다. 온두라스는 매우 가난한 나라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부국이다. GNP도 높다. 물론 한국도 경제위기를 겪긴 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부국이다. 그런데, 한국이 왜 강제노역에 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지 답해달라. 강제노역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데, 왜 이 중요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인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두 개의 조약은 왜 비준하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Socia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약 비준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16개 주요 기본 조약 중 10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답을 원한다

- 강경화: (질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추가답변과 거의 동일한 대답)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약은 국내상황 상 아직 비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30일 오후 회의가 끝날 무렵 "30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고 강경화씨 발표)

- Texier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질문이다. 답변을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초안이 1998년 만들어졌고 토론되어왔으나, 민간단체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그럼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예컨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자체 재정을 가지고 있는가?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충분한 액수가 되는가? 노동조합,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의 여러 부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적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조사한다고 답변서에 적혀 있는데,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또한 다루는가?

- Hunt 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또한 다루냐라는 Texier의 질문을 반복한다.

- Martynov 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또한 다룰 수 있는가?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여당법안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원회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 강경화: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조문 전체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형태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이고 한번 더 연장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해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고 구제방법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해 권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조사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교육, 고용, 재화, 주거 등의 이용에서의 차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에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제외) 5)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우선 서면 조사로 진행된다 6) 방문조사권, 청문권 등을 가진다 7) 독립된 예산을 가진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로서 예산안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법무부는 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어제 통과된 법안을 영어로 번역하여 추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 Rattray 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 Texier 위원: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사항만을 다루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항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점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일반논평 10을 특히 참조해주기 바라며, 다음 보고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담아주기를 바란다.
- 강경화: 이미 언급하였듯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대한 자세한 정부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 (Rattray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룬다.

여성차별, 여성폭력에 대한 조치

- Atangana 위원: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책에 대해 알려달라.
- Barahona Riera 위원: 1) 성 평등을 모니터하는 부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한 정도로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법적인 구제책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정부 예산 중 여성부의 예산은 어떤가? 신설된 부처인데 구조는 어떠한가? 2) 민법의 개정에 대해 쓰여져 있는데, 이미 도입되었는가? 이미 집행되었는가? 여성들이 문제에 부딪쳤을 때 법정으로 가는가?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가? 3) 가정 폭력을 없애기 위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정책이나 캠페인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최근 통계가 있는가? 4) 경제위기가 여성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 Sadi 위원: 많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 말했는데(예를 들어 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등) 이런 법률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답해달라.
- Thapalia 위원: 법과 실제에 차이가 많은 것 같다.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관련 법/규제와 실제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는 어떠한가? 가정폭력의 수치는?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 강경화: (Atangana의 질문에 대해) 현재 63개의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7개의 보호소가 있다. 또한 120개의 가정폭력상담소와 27개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때때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없으며 공공근로, 정신과 치료, 재교육 등에 관한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가해자의 문제점을 치료하여 가족이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폭력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Riera의 질문에 대해) 2001년 여성부의 예산은 약 267억$이며 이는 과거 여성특별위원회 예산의 두 배에 달한다. 여성부 이외에도 여타 6개의 부처(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농림수산부)에 여성관련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여성부의 구조 및 각종 여성관련 캠페인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 .....이혼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동안 금지하던 관련민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 경제위기 및 이후 구조조정과정이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녀 모두 경제위기의 희생자였으며 특별히 여성의 고용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통계는 없다고 보여진다. 경제위기동안 여성의 실업률은 2.5%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의 실업률은 2.8%에서 크게 7.6%로 증가했다 ..... 실업여성에 대해서는 전국의 46개 직업훈련소가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여성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 .....

(Sadi와 Thapalia의 질문에 대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은 고용, 교육, 법집행 등에 있어 발생되는 성차별에 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진정을 접수한 여성부는 사건을 조사하여 성차별 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를 불러 합의에 이르게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조치를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총 353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66건은 성희롱사건, 113건은 고용상의 성차별이었다. 해결건수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합의 또는 여성부의 권고를 통해 해결되었다. 여성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에 제소된 경우는 없었다.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한국정부의 철학

- Rattray 위원: 한국정부 대표의 모두 발언에 대한 견해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 발언에 한국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경험했을 때, 정부는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반대되는 입장에 부딪쳤을 것이다. 특히 노동 부문 개혁과 관련해, 발언문을 통해, 한국정부는 "국가경쟁력과 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때,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쳤다. 하지만 노동유연성의 제고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경제가 국경없는 세계 경쟁시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한국의 통치철학인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주요하게 보장하는 조약에 일정한 제한을 두면서, 경쟁을 중시하는 철학을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다. 조약 하의 의무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성취하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가?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약 하의 국가의 의무가 일반적인 사법절차과정에서 다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이용되는가? 즉, 사법심판이 가능한가?
- 강경화: 모두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경제성장은 인간의 얼굴(human face)을 한 것

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번영이 지탱될 수 없다. ..... 정부는 국민들이 풍족하고 존엄성 있는 삶을 향유하기를 원한다 .....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bankruptcy직전의 상황이었고 한국정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

1993년 비엔나 선언에 따른 국가인권행동계획

- Hunt 위원: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각 국가들이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of Human Rights)을 세우고 행동해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었다. 한국정부는 이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답해달라.

-강경화: 종합적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논의가 없지만 각 부처별로 조금씩 준비해오고 있다. 우리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화교에 대한 차별

- Thapalia 위원: 한국에서 국적은 속인주의에 따른다. 민족적 소수자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법적,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다른 나라로 옮겨 갔다. 학문이나 공직 사회에 진출하기도 힘들다. 시민권 획득에도 어려움이 있다.

-강경화: 아마도 한국에 거주하던 많은 화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난 주된 이유는 부동산 소유에 관한 제약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해 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 6월에 개정된 외국인토지소유법에 따라 대부분의 제약이 철폐되었다. 또한 요즘에는 외국인이 공직에 채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의 권리

-Thapalia 위원: 장애인에 대한 법/규제와 실제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는 어떠한가?

-Martynov 위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장애인을 2%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현황은 어떠한가?

-강경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들을 설명(장애인 의무고용 2%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이상의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저리의 대출을 해주고 있음.)

<규약 6,7,8조에 관하여>

강경화: 정부답변 발제(정부의 추가답변을 참조)

ILO 조약의 비준

- Texier 위원: ILO조약 2, 29, 105, 87, 98호의 비준과 관련하여 5년 전의 상황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ILO는 선언을 통해 위 조약들이 ILO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지만, 한국은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비준을 거부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비준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 노동부: 우리는 ILO의 선언(1998)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대로 국내상황 상 주요기본조약들을 아직 비준하기가 어렵다. 공무원노조결성에 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어 나온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에도 정부는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교사의 노조결성권이 인정되었으며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가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 Texier 위원: 실업률을 산정함에 있어 part-time worker와 seasonal worker의 통계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Grissa 위원: 비정규노동자의 정의에 대해 밝혀달라

- 노동부: (Texier의 질문에 대해) 4.1%라는 실업률 통계는 ILO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일용직노동자 또는 단기, 비정규노동자의 통계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 실업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Grissa의 질문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여전히 연구 중이다. 한편 노조는 비정규직에 파트타임, 임시직, 독립계약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 내리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Riedel 위원: 1)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취해진 실질적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달라. 2) 독립계약자형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관해 설명해주기 바란다.

- Cheausu 위원 : 남녀임금격차에 대해 사법기관이외에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노동부: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 여성우선해고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 각지방 노동사무소에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에 관해 진정접수를 받고 있다 ..... 직장여성들을 위해 공공 아동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과 적용

- Texier 위원: 최저임금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정기적으로 재설정되는가?
- Martynov 위원: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최저임금제의 실제수급자는 2.1%정도밖에 안된다는 정보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 강경화/노동부: 최저임금책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1년에 한번씩 재설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산업재해

- Martynov 위원: 관련규제완화로 인해 산업재해의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 답변없었음.

단결권 및 노조활동 탄압

- Texier 위원: 규약 8조에 관해 위원회는 6년전 최종견해에서도 교사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및 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상황을 거의 개선된 것이 없는 듯하다. 특히 파업을 범죄화하고 형사처벌하는 경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파업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금융노조파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결정이 내려진 25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등에 대한 파업은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Grissa 위원: 1) 합법적 파업과 불법적 파업의 정의, 파업의 합법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 강: 정치적 동기를 가진 파업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대량해고 및 구조조정과정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노조활동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관하여 지적하였는데 아마도 대우자동차 노조의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이후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이는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노조의 활동이 폭력적이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노조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대우차노조와 관련한 경찰 폭력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 노동부: 1997년 노동관련법규를 개정하면서 노조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파업의 합법성여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단체협상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이슈의 범위도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관해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금융노조파업건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다.
- Wimer 위원: 교사의 파업권에 관한 질문(교사에 대한 전통적 권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무

원의 노조결성금지는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닌가?

- 답변 없었음
- Texier 위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정부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관해 여전히 우려하는 바이며, 특히 한국정부가 '정치적 파업'이라는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양규헌 사건 언급). 마지막으로 Comment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immediately)'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정부는 그 당시와 똑같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전통적 지위(국민들로부터 높은 존중을 받는다는)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원회의 지난 최종견해의 권고는 실패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제3차 보고서에도 똑같이 변명할 것인가? 규약 8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깊이 제고하기 바란다.
- 강경화: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련하여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교사의 노조결성이 합법화되었고 공무원의 노조결성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년 권고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에는 부응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점차적이고도 단계적인 노력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농촌 및 식량의 상황

-Ahnmed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예, 농촌의 상황, 소작인의 비율, 한국의 식량 자급상황, 농촌아동의 교육,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 등)
-강경화: 농촌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Ahmed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관련정보는 농림부에 문의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농업은 한국에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직종이다. 농업은 대부분 자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없다). 교육,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도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도 농촌에, 외국인노동자가 점점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외국인노동허가제에 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밖에도 1)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다루느냐 그리고 판사가 있느냐는 Texier의 질문에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설명함. 2) 대량해고와 실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였다는 점, 명예퇴직, 60일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한다는 것 등에 관해 설명함.

<규약 9, 10조에 관하여>

강경화: 정부답변 발제(정부답변서 참조)

사회보장 및 건강권 제도(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등)

-Riedel 위원: 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확장 등은 긍정적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NGO의 정보에 의하면, 2000년 말 기준, 공적 연금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4.4% 정도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경우 전체임금근로자의 48.6%와 32.6%가 각각 제외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외래의 경우 70%, 입원의 경우 47%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국민기초생활법의 실효성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강경화/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대상은 처음 교사, 공무원, 군인들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그 자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2000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16세부터 60세까지 1천6백8십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5-60%이다. 대상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는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민연금제 안에 포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했으나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에 기인한다. 경제가 회생돼 이러한 사람들인 연금제도로 다시 포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분담금이 높은 이유는 의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본인부담금은 Riedel위원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관련 법률상 입원의 경우 20%이고 외래의 경우 32.55%이다. 보험혜택이 안되는 의료서비스가 있어서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 기준보다 약간 높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부: 산재보상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만약 고용주가 보험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하더라도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의료비가 제공된다.

- Ceausu 위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의료보험에 있어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Pillay 위원: 빈곤의 심화 국민의 1/4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현금지급율이 낮고 그 수준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며,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실직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사회보장예산이 총예산의 7%정도인데 반해 방위비예산은 17%를 차지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Rattray 위원: 한국정부가 빈곤선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최저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적정한 수준인가?

-강경화: 빈곤선에 관하여 정부보고서에 오기가 있었다. 전체 국민 중 40%가 아니라 저소득층 중 40%가 빈곤선 이하에 있다. (사회보장예산에 대해) 사회보장예산이 낮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분단극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한된 수단 내에서, 최대한의 자원이 사회보장을 위해 주어진다.

-강경화/보건복지부: 국민생활보장법은 연령, 노동능력에 상관없이 일정한 생활수준이하의 국민은 누구든지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법 수급자 수와 비교해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서는 수급자가 1,540,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긴급급여 제공에 대한 설명(화재, 부모 실종 등의 경우)

- Riedel 위원: NGO정보에 의하면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산재보상보험이 전체임금근로자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근로감독관의 부족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달라.

- 강경화: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2001년 3월 현재 1,055명, 활동영역별로 숫자를 설명).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보호

- Riera 위원: 1)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한다. 2)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해 가족법 및 민법의 개정 중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 내용과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강경화: 1) 비정규직 여성에 대해,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산재보상보험은 정규/비정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최저생계비 기준을 언급 ..... 일정한 소득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된다. 2) 재산에 대해 이혼여성 또는 가정주부의 권리에 있어 개선상황을 보여주는 판례를 설명.....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힌 이는 여성의 권한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 여성들이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원치 않는 결혼에 속박되었다.

- Pillay 위원: 현재 출산휴가는 60일로 정해져 있다. ILO협약에 따라 이를 14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 미국무부 보고서와 인권이사회의 최근 최종견해에 따르면 여자 태아에 대한 낙태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강경화: 현재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휴가일수는 60일이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한다. 정부는 유급 90일 휴가로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추가 30일의 임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 사용자는 오직 60일에 대해서만 계속 지급할 것이다.

태아 성감별과 잇따라 발생하는 여자 태아의 낙태가 문제다. 성의 불균등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정부는 태아 성감별을 금지했다. 남아선호는 지속적인 관행의 문제다. 1991년, 인위적인 낙태의 숫자가 여성 1000명당 1.1명이었다. 1994년, 그 비율은 0.8명로 떨어졌다. 1997년엔 0.7명로 떨어졌다. 낙태비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희망하고 있다. 한편, 태아 성감별 및 그에 따른 낙태는 위험한 낙태 관행을 유도했으며 높은 비율의 모성사망을 이끌었다.

- Rattray 위원: 남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가?

-강경화: 대부분 가정폭력의 경우 아직도 여성이 희생자이다. (이후 답변 정정: 성폭력방지법의 경

우 여성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정폭력방지에 대책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해당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

-Sadi 위원: 아동매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보고서나 추가답변서는 이러한 문제의 너무 간단하게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있는지 그리고 아동성적착취에 대한 통계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설명을 바란다.

-강경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한국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관련통계는 추후에 제공하도록 하겠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가해자의 신분공개, 긴급전화신고 개설, 아동에 대한 의료 및 보호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매춘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물질만능주의,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 등이다. 아동 착취 및 성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담당 부처가 있다.

-여성부: 여성부의 신설 .....남녀평등에 관해 국민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교육센터, 캠페인,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언급) ..... 행동한국에서 성 매매는 불법이고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그 개정법은 여성의 사회 복귀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 Wimer 위원: 매춘을 범죄화하고 있는 것과 매춘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함

-강경화/여성부: 매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매춘은 범죄이며, 윤락여성이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규약 11, 12조에 관하여>

강경화: 정부답변 발제(정부추가답변서 발제)

건강권

- Malinverni 위원: 1)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의료에 대해 정부는 추가답변서에서 상호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난민 NGO로부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버마 난민신청자에 대해 아무런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정보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2) NGO의 정보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민간기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의료접근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편, 의료보험예산을 제외한 보건의료만을 계산해보면 1%도 안되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강경화: 1) 이미 언급했듯이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이들은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에게 별도로 보호소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공공의료기관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민간에 상관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의료관련질문이나 보건의료예산에 대

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이후 보건복지부 답변: 의료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

- Ceausu 위원: 1) HIV/AIDS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HIV/AIDS 환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방지하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2)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3) 공공의료예산의 절반이 건강보험예산인데 건강보험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어떠한가?

- Wimer 위원: 1) AIDS예방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예방 캠페인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2) 낙태에 관한 법적 장치 및 정부의 태도에 대해 궁금하다.

- Atangana 위원: 1) AIDS치료에 관련에 환자들이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2) 국립 암치료 기관이 있는가? 나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떠한가? 전염병에 관련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강경화: 국립 암센터가 일산에 설립되었다. HIV/AIDS와 관련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료로 AIDS 검사를 받을 수 있다. AIDS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AIDS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어떠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캠페인의 성격에 관련해 콘돔이 제공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염을 경고하기 위해 팜플렛을 배포한다.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제는 의사와 환자사이에 낙태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감독할 수가 없다. 나환자에 대해 무상치료가 제공되고 있고 환자가 원한다면 격리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들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된다.

- Riedel 위원: 1) 위원회 일반논평 14의 43, 44항의 주요의약품의 배포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해 언급 ..... 한국에 가서 농촌지역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농촌지역에 주요의약품 배포 상황에 대해 궁금하다. 2) 정신 건강 관련, 누가 입원 혹은 진료를 결정하는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가 있는가?

- 강경화: 1) 일반논평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논평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제한된 인력 및 물적 자원 때문이지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농촌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계속 증가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대부분, 비영리 기관들이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한다. 의료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치료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권

- Pillay 위원: 1) NGO정보에 따르면,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한 주거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철거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2) 홈리스가 5천명이라는데 이 수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3)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수급자가 약 540만명에서 1,540만명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는 것에 대해, NGO에 정보에 의하면, 이 통계는 정확하지가 않다. 4) 판자촌과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있는가?

- Texier 위원: 29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개발협의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협의회가 재개발사업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는가? 강제퇴거에 관해서는 1995년 최종견해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에서도 다시 우리는 강제철거의 문제점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가? NGO정보에 의하면 5000명의 노숙자가 있다는데 이 수치에 동의하는가?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있는가?

- Ceausu 위원: 정부보고서 188항 표22과 229항의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음에 대해 지적.

- 강경화: 1) 주거대책 없는 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시행자는, 집이 철거되는 거주자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융자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재개발을 시행할 수 없다.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모든 법제가 그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민간개발업자의 경우도 보상 없이 집을 철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책마련 없이 강체철거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호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특정 사례를 대달라. 2) 노숙자는 정규 숙소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걸하거나 길을 배회하는 사람들로 정의하며,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다.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운영되는 쉼터가 전국적으로 150개다. 그리고 정부가 이들의 음식과 옷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45개의 복지시설에 수용된다. 정부는 노숙자들이 가능한 빨리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귀 및 자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연령이나 노동능력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이하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급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규약 13, 14, 15조에 관하여>

강경화: 정부답변 발제(정부 추가답변 참조)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

- Wimer :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출입국상 지위(불법체류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초등교육의 혜택을 받는가?

- 강경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초등교육이 제공된다. 불법체류노동자의 자녀들이 무상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교육권 전반

- Hunt 위원: OECD회원국의 교육비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사교육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UNESCO한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교육 예산이 매우 적고 사교육비가 높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학부모는 사교육비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이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위원회는 고등교육도 점차로 무상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Rattray 위원: 1) 초등교육이 무상이라고 하는데 '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과서와 급식 모두 무상인가? 2) 교육비 부담도 최저생계비 또는 사회보험 체계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고 있는가? 3) 고등교육비가 높은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사립대학이 많은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사립대학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4)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 Martynov 위원: 1) 무상중등교육이 재정상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무엇을 우위에 두고 있는가? 정책결정의 철학은 무엇인가? 중등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Timeplan이 설정되어 있는가? 2)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인식하고 있는가? 3) 초등교육이 무상화되어 있다는데 그 교육의 질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떠한가?

- 강경화: (Hunt의 질문에 대해) 교육비예산이 1999년 20.6%에서 2000년 21.2%로 증가했다. 한편, 사교육비 문제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때문이다. 빚을 지더라도 사교육을 하려한다. 소득격차가 고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게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대부분의 대학 재정이 학생 등록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고등교육비용을 낮추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이 남성과 여성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낳는 것 같지는 않다. 2000년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여성 졸업자의 수가 남성 졸업자의 수와 대등하다. 물론 가족 내에서 경제상의 어려움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먼저 교육시키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이러한 경향도 해소되고 있다. (Rattray의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완전 무료로 제공된다. 급식은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아주 최소한의 급식비만 내면 된다. 사립대학은 신고하면 설립가능하다. 대학설립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공교육시설에 비해 사립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Rattray의 지적에 동감한다.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다. (Martynov의 질문에 대해) 중등교육무상화는 이미 농어촌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전체학교의 19%정도가 무상화되었다. 2004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교육의 질에 관하여 정부도 계속 검토, 개선 중이다. 정기적으로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인권교육

- Hunt 위원: 1) 정부가 교육정책을 마련할 때 규약 13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3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2) 교사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는가?
- 강경화: 1) "Yes, we do" . 2) 교사 연수과정에 인권교육이 제공된다.

문화권

- Romero 위원: 1)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새천년 예술의 해'를 정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문화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인가? 국수주의적 내용은 아닌가? 2) 여성, 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물에 대한 접근성은 어떠한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문화적 정책계획이 있는가? 3) 예술가의 창조성에 대해 어떠한 보호가 제공되는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는가? 4) 정부추가답변에서 정부는 어떠한 검열도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문화창조물에 대한 검열의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등급위원회가 그렇다. 등급위원회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Red Hunt, Rice-Planting, 태백산맥 등의 창조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문화창조물에 대한 검열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강경화: 1) '새천년 예술의 해'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금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정부는 문화의 다원성과 관용을 존중한다. 2) 통일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저작권 보호법이 있다. 4) 국가보안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이며 휴전선 너머 적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는 없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정도 검토중이다. 한편, 등급제도는 좋은 윤리와 사고방식을 고무하고, 폭력 및 음란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단체이며 스스로 기준을 만든다.

강경화: Closing statement

위원회 최종견해
(한글,영문/ 2001년 5월)

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한국

1. 위원회는 규약 1~15조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2차 이행보고서(E/1990/6/Add.23)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E/C.12/2001/SR12,13 and 14)에서 심의했으며,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서문

2. 위원회는 포괄적 내용의 이행보고서와, 위원회의 질의사항(E/C.12/Q/REPOFKOR/2)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한 당사국(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발표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많은 수의 전문대표들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또는 구두 답변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본 이행보고서가 많은 중요사안에 관한 정보나 최근의 통계,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되었던 지난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제안과 권고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의 실현에 있어 이루어진 최근의 일부 진전 등에 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일련의 법과 계획들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6. 위원회는 여성부의 신설에 주목하며, 고용·외국인과의 결혼·자녀의 출생신고·자녀에게 성(姓)을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공립·사립 아동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관련계획들이 마련된 것을 위원회는 환영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7. 위원회는 최근 UN난민고등판무관실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난민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8. 위원회는 한국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규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핵심분야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적 현실에 주목한다.

10. 위원회는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1.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D. 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정리해고·고용상태 악화·소득격차 심화·가정파탄 증가·많은 사람들의 주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13. 위원회는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이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der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통계들이다.

15. 위원회는 1차 보고서 심의 이후에, 규약의 권리를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이 경우 신법(新法) 또는 특별법이 규약의 일부 권리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 6항에서 주목한 진전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평균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8. 위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이 교사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21.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위원회는, 기반시설·교육·보건의료 및 기타 필수 시설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도시 지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인구가 농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했으며 많은 노인들은 농촌에서 가족농지를 돌보기 위해 남겨졌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는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또는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 강제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26. 위원회는 보건 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 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중 2/3 이상이 남학생이며 이는 성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29. 위원회는 초등교육 단계만이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다.

30. 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직 한 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난민 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31.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직접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u>E. 제안과 권고</u>

33.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담겼던 제안과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이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34. 위원회는, 정부 활동의 인권적 접근은, 각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년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9를 참조한다.

37. 위원회는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규약 8조의 규정 즉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그리고 파업권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0. 위원회는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고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41.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focal point)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취약집단 또는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위원회는 규약 13조와 본 위원회 일반논평 13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그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그 합리적 기한설정(timetable);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3. 전통적인 관행이 어떤 권리를 향유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거나 남아 선호 및 여자태아의 낙태 등 어떤 종류이든 차별을 존속시키는 한, 한국정부는 일반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44. 위원회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속에, 본 위원회 및 기타 다른 조약 기구들이 채택한 견해(observations)들을 고려하면서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 행동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3차 이행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

45. 위원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제3차 이행보고서에 농촌 부문의 상황과 농업 및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UNEDITED
E/C.12/1/Add.59
11 May 2001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non-compliance with reporting obligations by States partie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rticles 1 to 15 of the Covenant (E/1990/6/Add.23) at its 12th, 13th and 14th meetings (E/C.12/2001/SR12, 13 and 14) held on 30 April and 1 May 2001 and adopted at its 26th meeting (twenty-fifth session) held on 9 May 2001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tate party for the comprehensive report and for the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questions (E/C.12/Q/REPOFKOR/2).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presence of a large expert delegation which presented the report and which approached the dialogue in a frank and constructive manner. The Committee, however, notes that the report failed to include information on several important areas and updated statistics, particularly on the critical situation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although this was partly remedied in the written and oral information subsequently provided to the Committee.

3. The Committee regrets that most of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upon examination of the initial report, have not been implemented.

B.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and rapid economic recovery from the 1997-1998 financial crisi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ent open climate towards human rights generally and the advances recently realized in the enjoyment of som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adoption of a wide range of laws and programmes aimed at ensuring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all persons, includ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f 1999,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It welcomes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to workers in all enterprises, whereas the minimum wage had previously been applicable only to workers in enterprises employing over 10 persons.

6.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It also notes with satisfaction the actions taken to grant women equality with regard to employment, marriage to foreigners, equality in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and the possibility of passing on their family name to their children. It further welcomes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programmes in place to significantly expand public 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which are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in remunerative activities.

7. The Committee welcomes the recent opening of an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n Seoul, through which applications for asylum can be processed.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8.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is experiencing a period of major socio-economic transition that affects its ability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9. The Committee notes the continued negativ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pervasive "fortress mentality", which is enforc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Moreover, the high level of defense expenditure creates an imbalance in contrast with the shrinking budget for key area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0. The Committee notes that deeply rooted traditions and cultural prejudices

marginalize certain categories of persons, such as migrant workers and many women.

1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economy-first" approach adopted by the State party has resulted in a low priority placed o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is has led to the marginalization of certain groups in society in such matters as housing,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did not take into account its Covenant obligations when negotiating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overcome its financial crisis and restructure its economy. The over-reliance on macro-economic policies has had profound negativ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at there have been large-scale employee dismissals and lay-offs, the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employment stability, growing income inequalities, an increasing number of broken families and marginalization of a large number of persons.

13. The Committee views with concern that the rapid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has not been matched by efforts to guarante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such a situation, some rights or the rights of some groups are being sacrificed for the sake of economic recovery and market competitiveness.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data collection methods of the State party do not seem to be fully reliable. Examples include data on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housing, poverty and migration. In some cases, there were very large gaps between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hose from other sources, including the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mes designed to address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nd marginalized people.

15. The Committee regrets that no adequate effort has been made since the examination of the initial report to ensure that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venant are fully enshrined in law.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status of the Covenant is equal to that of domestic laws, by which the protection of some rights may be overriden by subsequently enacted laws or special laws. It regrets the lack of clarity as to whether all Covenant rights can be invoked in domestic courts and further regrets the absence of any case law.

16. Notwithstanding the advances noted in paragraph 6, the Committee notes with deep concern the continued unequal status of women. Persisting problems include the

traditional preference for sons, which is manifested in a high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s of girl fetuses that threaten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the patriarchal head of family system ("ho-ju") as defined in law; the high incidence of domestic violence; the relatively low access by women to tertiary educati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a large gap in the average salaries paid to women and to men.

17.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pecific conditions of work to which the so-called "irregular workers" are subject have not been clarified during the dialogue. Information from independent sources indicate that "irregular" workers are distinguished from "regular" workers, although they often perform the same tasks, in that irregular workers receive lower wages, pension benefits, unemployment and health benefits and job security. It also notes that the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to the general labour force has grown to half, the great majority of them being women.

18. The Committee is alarmed at the rising incid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recent years, which appears to be the result of a relaxation of the standards governing industrial safety and of the insufficient number of on-site inspectors.

19. The Committee notes that teachers can legally enjoy their right under article 8 of the Covenant to form and belong to trade unions. However, it is concerned that they are still prevented from participating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in strikes, a right guaranteed in both the Covenant and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article 33). While cognizant of the elevated status that is traditionally bestowed on teachers in Korean society, the Committee considers it in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assume the role of guardian of traditions that prevent the exercise of this fundamental right.

20.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laws governing industrial actions are not transparent and appear to give the authorities inordinat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strikes. In this regard, it considers entirely unacceptable the approach taken to criminalize strike activities.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deeply disturbed by the excessive police force used in recent labour demonstrations that had been set off by massive lay-offs. The Committee consider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circumstances to be a clear negation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8 of the Covenant.

2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rising incidence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hild labour and hardships caused by a breakdown of the family. In this regard, the legal protection accorded to children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adequately implemented.

2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shifting population distribution from the rural to the urban areas, with most Government programmes to develop

infrastructure, education, health care and other essential facilities being highly concentrated in the urban areas. Urban migration of younger people has left many older persons to care for family farms in the countryside.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ituation of persons living in rural areas has not been sufficiently dealt with during the present dialogue

23. While welcoming the adoption of programmes to supplement the incomes of those living under the poverty line, notably throug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Committee has doubts about the adequacy of the assistance given. The eligibility criteria are apparently so rigid as to exclude many of the poor, and the amount of financial assistance regularly awarded can reportedly be drastically reduced without notice and without reaso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is said to have nationwide coverage open to all persons, nevertheless fails to provide for an inordinate proportion of the workforce who are reaching pensionable age but have not been able to contribute into the system for a sufficient number of years.

24.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despite the State party's attempts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previous 2% quota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all workers in enterprises employing over 300 employees, has not been met, even within Government agenci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is purpose do not seem to have been established.

25.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accur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number of forced evictions and the specific conditions under which they can occur,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 General Comment No.7.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victims of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are not provided with compensation or temporary lodging, unlike private homeowners who are evicted as a result of public projects. Moreo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for lower income groups, especially the vulnerable and marginalized groups; about the use of "vinyl houses" for dwellings, which pose grave risks to their dwellers; and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homeless.

26. The Committee is disturbed that the por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ed to health, which is under 1%, is low and declining. It is concerned at the predominance of privately operated health care facilities - estimated to exceed 90% of all health care facilities, a trend that accelerated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 and the consequent negative implications for access to health care by the most marginalized sectors of society.

27.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in public schools is compelling families to supplement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with private instruction, thereby placing undue financial burden especially on lower-income groups.

28.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predominance of private institutions in higher education, a fact detrimental to the lower income groups. It further notes that over two-thirds of th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re males,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29. The Committee notes that education is free and compulsory only at the primary school level, which is not commensurate with the State party's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present criteria for granting refugee status appears to be far too stringent, with only one application having been approved to date.

31.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human rights education has not yet been formally incorporated as a required subject for all members of those professions that are most directly involv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being used to curtail the activities of intellectuals and artists. Under this law, not only are their works being censored, confiscated or destroyed, but the intellectuals and artists themselves are being subjected to criminal prosecution.

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33. The Committee reiterates and affirms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concrete steps to implement them.

34.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a human rights approach to Government actions must begin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 in respect of each right,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must vulnerable groups, and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laws, programmes and policies. It urges the national statistical agencies and relevant ministries to review the ways in which data relating to all rights is collected through the lens of the Covenant.

35. While noting the enactment of a new law that establishes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commission in full conformity with the 1991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 and in this context, draws attention to its General Comment No. 10.

36.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ccord the Covenant a legal status that would enable it to be invoked directly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It

recommends that such status be superior to all national laws, whether precedent, antecedent or special, and refers in this regard to its General Comment 9.

3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the necessary resources to enable the newly established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to function effectively and to apply a gender perspective in legislation and in society.

3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irregular" workers be includ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In the meantime, it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consider the status of irregular workers and guarantee their rights under the Covenant.

39.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8 guarantee for all persons the right to freely form and join trade unions, the right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rade un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ir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as well as the right to strik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desist from us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rade unions for striking. It also urges the State party refrain from using any force beyond that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ight of teachers and other civil servant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to strike should be guaranteed in law and in practice. Detailed information on this is request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4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sexual trade of children and child labour, as well as expand its programmes directed at th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such victims.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 focal point within the Government for dealing with complaints or appeals for assistance on housing matters. It recommends that protection be provided, such as compensation and temporary housing, to victims of forced evictions resulting from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The State party should also ensure that adequate housing is available to members of vulnerable or marginalized groups. Moreover, the State party should take immediate measures to assist all those who are homeless or living in exceptionally sub-standard conditions, such as "vinyl houses".

42.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establish a plan to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conformity with article 13 of the Covenant and General Comment Number 13 of the Committee an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party's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pla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a reasonable timetable for specific a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free and compulsory secondary education; a re-examination of the functions and quality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relative to private educa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former and easing the burden on low-income groups imposed by

the latter; a study of accessibility of schools at all levels, including tertiary education, and specific actions to be taken to ensure equal access by all sectors of society; and a reassessment of the curricula at all levels of instruction directed at promot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formation on this matter is request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party.

43. In so far as traditional practices pose an obstacle to the fulfillment of some rights or perpetuate discrimination of any kind, including the preference for sons and the abortion of girl fetuses, the State party should carry out large-scale public campaigns to promote understanding among the general public about human rights.

4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epare,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 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observations made by this and other treaty bodies. It requests that information on such a national plan be provided in the State party's third periodic report.

4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in its third periodic report, to be submitted by 30 June 2006, on conditions in the rural sector and the situation regarding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 -

對정부 공개질의서
(2001년 5월)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Korea Network for the 2nd Submission of the Alternative Report under ICESCR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 민중의료연합),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김기연,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이주영, 02-741-5363)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금)
총 매수 : 15쪽 (공개질의서 2쪽, 별첨 13쪽)

1. 우리 사회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약칭 사회권연대회의)는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7개의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2000년 6월부터 활동했습니다. '사회권연대회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 정부의 제2차 이행 보고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5차 회기에도 참석해 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3. 위원회는 2001년 제25차 회기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 상황을 심사하고,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규약의 가입국으로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같은 맥락에서 규약의 심의기구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최종견해 내에 포함된 제안과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정부 대표단도 심의 과정에서 규약의 권리들을 보장할 의지가 있음을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4. '사회권연대회의'는 인권의 논의장에서 언제나 강조되듯 이행 없는 인권규범은 헛 껍데기에 불

과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정부가 이번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약의 권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인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사회권 연대회의 참여 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이행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사회권 연대회의는 아래의 내용들을 공개 질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가.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조정할 정부 내 주무기구를 밝혀 주십시오.

나. 위 1항에서 밝힌 주무기구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유관 부처 및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홍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행할 것인지 기한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각 권리 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언제 확정되어 이행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십시오.

라. 위원회는 최종견해 9항에서 국가보안법과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 위원회는 최종견해 11항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한계계층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아래에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 혹은 정부 대표의 답변 그리고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의 이행 계획에 대한 질의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 항에서 명시한 각 권리별 이행 계획을 세울 때, 별첨한 내용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의 최종견해

E. 제안과 권고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과정에서 위의 권고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부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위원회의 최종견해

E. 제안과 권고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9를 참조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 법제처는 규약과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규약과 상충하는 법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 국제조약을 가입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통해 국내법 중 조약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약을 비준한 이후에는 조약의 내용을 수용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
- 법원은 국내법을 규약 및 여타 국제조약의 내용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게 해석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법제처는 국제조약들이 국내법에 얼마나 잘 수용되어 있는지를 매년 검토한다.

2) 위원회의 최종견해 36항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이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우리가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뒤에도 구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상당 기간 유지되었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과연 규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금껏 어떤 절차를 두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4)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공개해주십시오.

5) 정부는 우리의 규약이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정부의 각 부처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및 관련 기관에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인권규약을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의 교육 및 법관 등 연수교육에서 국제인권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이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사회권 관련 통계>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der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통계들이다.

E. 제안 및 권고

34. 위원회는 정부 활동에의 인권적 접근은 각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8) 노동부는 실업 및 비정규직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ILO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비정규직 관련 개념, 통계방법을 입안함에 있어 노동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질의합니다.

19) 빈곤이나 강제철거, 사교육비 등 주요한 사회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관련 전문가들 및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협의 하에 개념 및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통계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6.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평균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6) 남아선호, 여아낙태 등 여성차별을 부추기는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7)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발생비율(1999년 10월 이후 월 평균 920여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충과 가정보호처분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8)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직장내의 여성차별에 대해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장 내 성희롱(여성공무원 19.7% 경험, 여성부·행자부 조사 2001.4)에 대한 처벌과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9) 현재 여성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10) 현재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3.3%(2000년 여성백서)에 불과합니다. 성별 직종분리현황, 연령차별문제 해소 등과 관련하여 남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회의 최종견해

E. 제안과 권고

37. 위원회는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43. 전통적인 관행이 어떤 권리를 성취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거나 아들선호 및 여자 태아의 낙태 등 어떤 종류이든 차별을 존속시키는 한, 한국정부는 일반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11) 일반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캠페인을 수행하고,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033%(94조 1,246억원 중 317억 7900만원)에 불과한 여성부의 예산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남녀평등캠페인, 지방자치단체와 성차별 개선사업 확대,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강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강화, 모성보호, 성매매 실태조사 및 탈매춘 여성쉼터 설치 등을 위해 대폭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장애우>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데 우려를 느낀다.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2%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주노동자>

위원회의 최종견해

C. 규약실현의 장애요소

10. 위원회는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이주노동자 보호에 관한 지침(1998)'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비롯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 지침은 노동부의 명령으로서 근로감독관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 현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할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외국인이 노동허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초등교육이 제공된다. 불법체류노동자의 자녀들이 무상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13)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지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과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수생 제도 하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권리 실현에 근본적인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문화적 편견만의 문제 뿐 아니라, 법·제도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수생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14) 정부가 2000년 추진했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과 차별대우를 전제로 했으며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작업장의 이동과 거주 및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차별금지'라는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노동허가제에는 완전한 노동기본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5) 불법체류노동자의 자녀들에게 무상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교육부만의 지침일 뿐,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교육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상급 단위 학교 진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난민>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30. 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직 한 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난민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위원: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인정여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지원을 제공받는가?
- 정부대표: 난민신청인들 대부분은 다양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각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산재보상이 확실히 보장된다. 난민신청인들은 난민인정결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이주노동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인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본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금되고 사법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그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했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관련기관과 사업장을 자유롭게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16)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절차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난민인정기관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점, 이의신청기관이 같은 신청기관이라는 점, 그 기간이 7일로 너무 짧다는 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조체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 신청자 나아가 난민인정자의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 입니다. 우리의 난민법(출입국관리법)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 질의합니다. 또한 UNHCR(UN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와 앞으로 어떠한 협력체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17) 난민신청인의 경제적·사회적 처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난민신청인=이주노동자"라는 정부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아무런 보호나 대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인과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인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E. 제안 및 권고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상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 비정규직 형태로의 취업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은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정규직에 대

한 보호를 완화하겠다는 노동경제학회의 노동부 연구용역 논문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1)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논의대로 비정규직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2)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파견법 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성 인정, 단시간 노동자 관련 규정 개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등 법제도적 개선의 구체적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동자의 안전>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8. 위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23)안전보건규제가 완화된 IMF 이후 안전보건관리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완화조치를 원상회복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24)26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200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급격한 증가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탄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약화에 기인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주,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노동기본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20. 위원회는 파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E. 제안 및 권고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5) 정부는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 상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이 단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6년 전(1995년) 권고한 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에 대한 사법처리 및 징계를 통한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할 구체적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26)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규약 8조의 권리들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금지 규정을 즉각 폐지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관련법을 개정하고 파업권 행사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관행을 제거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8)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가로막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질의합니다.

<아동>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1. 위원회는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가 야기한 아동 학대에 대해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제안과 권고

40. 위원회는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피해자들의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29) 아동 성 매매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합니다.

30) 일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는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명백하게도, 수급 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한다.

3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전책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재산 기준과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급자라 할지라도 추정소득 부과방식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의 재산 기준을 철폐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와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이 어떠하고 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2)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현재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 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모두 현재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규모 사업장 등의 정규노동자들만큼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해 강제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E. 제안과 권고

40.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현재 철거민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대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퇴거해야 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민간개발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 혹은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가옥주에게만 해당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주대책비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수용, 융자 등의 조치가 가옥주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절실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모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개발 이외의 공공개발사업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재개발사업보다 적고, 이 또한 위원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공공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3개월 이전부터 살지 않으면 세입자 대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공공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개발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 융자 등의 수단을 가옥주뿐 아니라 퇴거를 당하는 모든 세입자에 대해 적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4)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배분과 관리 체계를 가구별 수요, 적정한 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할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5)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이를 기초로 주거빈곤 현황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 과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불량, 점유 불안정 등 다양한 유

형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과 가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6. 위원회는 보건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 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36) 공공보건의료 부문이 대단히 취약한 민간의존적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훼손당하고 국민의료비가 비효율적으로 팽창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공공보건의료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위기를 구실로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취약한 공공 부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7) 우리나라 보건의료예산은 정부 예산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보건의료예산은 공공의료 부문의 정체를 가져오고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의료 제공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보건의료 예산의 확충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위원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외래의 경우 70%, 입원의 경우 47%에 이른다고 한다.
- 정부대표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의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본인부담금은 위원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관련 법률상 입원의 경우 20%이고 외래의 경우 32.55%이다. 보험혜택이 안되는 의료서비스가 있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수준은 이 기준보다 약간 높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위원 : 의료보험에 있어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38) 의료개혁위원회(1997)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기준으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43.25,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3.7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이루어진 김창엽 등(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평균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52%에 달하며,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7.4%,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4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실에 관해 사실 그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경제상황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수준" 등의 발언에서는 사회보장과 건강권을 보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아 의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구실로 예정되었던 보험적용 범위 확대계획을 백지화했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정률제 본인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실질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적용 확대와 본인부담금 수준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히고,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39) 현행 의료보호제도는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종별 구분이 유지되며 본인부담금 제도가 존치되는 등 빈민의 의료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로 빈민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홀대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제도의 종별 구분 철폐 및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 등 개선 방안과 일정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1995년)

한국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해 한계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정부대표: 난민신청인들 대부분은 다양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각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산재보상이 확실히 보장된다. 난민신청인들은 난민인정결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이주노동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0)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자료(2000년 10월 4일)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 중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정부대표의 답변은 사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난민신청인들이 이주노동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은 거꾸로 난민신청인들도 이주노동자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난민에게 기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의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교육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이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되는 점을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중 2/3 이상이 남학생이며 이는 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29. 위원회는 초등교육단계만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지 않다.

31.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직접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E. 제안 및 권고

42. 위원회는 규약의 제13조와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3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일정 설정;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인권의 요소는 모든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41)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고소득가구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를 들이고 결국 교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낳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42)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선풍기 2대에 의지해 30℃가 넘는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 교사에 대한 풍부하고 실효성있는 연구의 부재,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상황과 교육 주체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 정책기조가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43)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높은 등록금이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대로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연구하고 사회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4) 정부는 현재 모든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교육과 임용, 교육과정의 문제,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지식 중심 교육 제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 연수를 실시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들을 일선 학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인권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학급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자치 조직의 활성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45) 위원회의 우려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양심과 표현, 예술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 혹은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회권 연대회의 실무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권 운 동 사 랑 방

전화 : (02) 522-7284　　전화 : (02) 741-5363
팩스 : (02) 522-728　　팩스 : (02) 741-5364
E-mail) m321@chollian.net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jylee0530@orgio.net